

[2015년도 제3회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중국근현대사학회 2015년 9월 정례발표회 발표자료집

일시: 2015년 9월 19일(토요일) 오후 2:00-5:20

장소: 충북대학교 N 18동(구 법학관) 112호 종합강의실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2015년도 제3회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중국근현대사학회 2015년 9월 정례발표회 발표자료집

일시: 2015년 9월 19일(토요일) 오후 2:00-5:20

장소: 충북대학교 N 18동(구 법학관) 112호 종합강의실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2015년도 제3회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목차

사회: 박경석(인천대학교)

제1발표 (14:00~15:00)

김경(서울대), 開港 初期(1861-1869) 津海關과 直接貿易

토론: 강경락

제2발표 (15:00~16:00)

한상협(한양대), 清末 「大清國籍條例」(1909)의 制定과 ‘近代中國’의 構想

토론 : 정지호

휴식 (16:00-16:20)

제3발표 (16:20~17:20)

김세호(한남대) 중화민국헌법의 설계자 吳經熊의 법률사상

토론: 김승욱

만찬(17:20-)

開港 初期(1861-1869) 津海關의 直接貿易

- 海關統計를 中心으로 -

金 慶¹⁾

머리말

I. 天津 貿易 現象의 諸 類型

II. 直接貿易의 方案과 經濟的 效果

맺음말

머리말

天津은 1793년 조지 매카트니(George McCartney)의 사절단이 淸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開港이 거론된 이래 항구로서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졌다.²⁾ 1861년 청조는 “中英續增條約”에 의거해 津海關³⁾을 개설하였다.

1861년 4월 말 奕訢이 올린 상주문에 따르면,⁴⁾ 진해관 개설임무는 恆琪, 崇厚, 로버트 하트(Robert Hart), 세실 코레아카코프스키(Cécile Kleczkowski)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⁵⁾ 5월에 정식으로 설립된 진해관은 성내의 梁家園에 위치하였으나 1869년 영국과 프랑스 조계지의 접경지대인 紫竹林 일대로 이전하였다. 그 후 자죽림은 진해관의 대명사가 되었다. 진해관의 관할범위는 大清河로부터 山海關까지인데, 秦皇島 分關과 塘沽 分卡가 있다.⁶⁾ 秦皇島 分關은 세수업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塘沽 分卡는 세수업무는 없으나 전문적으로 순찰을 맡았다.⁷⁾

1)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2) 1850년 兩江總督 陸建瀛은 천진의 海口 방어 책략을 상주하면서 “천하의 海口 중 가장 의지할 만한 곳이 天津이고, 천진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陸建瀛又奏天津海口籌防之策片」, 『籌辦夷務始末(咸豐朝)』, 北京: 中華書局, 1979, 79쪽. 이하 『籌辦夷務始末(咸豐朝)』로 약칭한다.

3) 煙台(芝罘), 上海, 寧波에 개설된 해관의 공식 명칭이 東海關, 江海關, 浙海關이듯이 中國海關 史상 해관의 명칭을 도시명과 다르게 제정한 경우가 많았다. 煙台(芝罘), 上海, 寧波에 설립된 이유로 ‘煙台(芝罘)海關’, ‘上海海關’, ‘寧波海關’으로 하는 것은 엄격히 분석하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천진해관(天津海關)’ 역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다.

4) 「奕訢等又奏李泰國已回國另薦二人來津崇厚并請恆琪會辦片」, 『籌辦夷務始末(咸豐朝)』, 2830-2831쪽.

5) 당시 總稅務司 허레이시아 넬슨 레이(Horatia Nelson Lay)는 명의상 총세무사일 뿐 사실상 관직을 마다하고 귀국했다. 「奕訢等又奏李泰國已回國另薦二人來津崇厚并請恆琪會辦片」, 『籌辦夷務始末(咸豐朝)』, 2830쪽.

6) 黃序鵬, 『海關通志』, 上海: 商務印書館, 1921, 54쪽.

7) 黃序鵬, 『海關通志』, 上海: 商務印書館, 1921, 54쪽.

1861년 6월 10일 하트는 천진에 도착해서 진해관의 건설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하트가 중국정치에 입성한 후 官界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사건이다. 본 임무는 금후 하트가 중국에서 영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레이 귀국 이후 하트와 조지 헨리 피츠로이(George Henry Fitzroy)는 함께 署總稅務司로 임명되었지만, 1861년 6월 30일 북경에서 하달한 總稅務司署通令⁸⁾ 제1호에는 하트만 서명하였다. 심지어 通令에는 “이하 각 해관세무사에게 내린다. …… 江海關⁹⁾ 피츠로이”¹⁰⁾로 되어 있는데 하트는 피츠로이를 지방의 稅務司와 똑같이 취급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署總稅務司兼江海關稅務司가 署總稅務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해관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써 진해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21세기 이전의 연구들은 정치외교와 경제약탈이란 측면에서 진해관의 ‘중요성’을 논하였다.¹¹⁾ 근대 중국의 해관이 정치외교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관의 가장 기본적인 직책과 기능은 통관하는 상품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해관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정부가 해관 관련 공정[프로젝트]을 추진함에 따라 배후지 경제[腹地經濟]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받았다. 천진무역 연구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관무역’과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¹²⁾ 하지만 대부분 개항 초기 이후의 시기에 대한 연구이다. 일부 1860~1861년이나 1866~1868년을 기점으로 한 연구도 있지만 모두 진해관 통계사료를 그대로 인용하였거나 또는 민국시기 학자들이 정리한 2차 사료를 인용하였다. 필자가 기존의 연구¹³⁾에서 규명했듯이 1860년대 진해관의 통계사료는 그대로 인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고증을 거친 진해관 무역통계 사료를 근거로 개항 초기의 해관무역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점을 통해 1860년대 진해관과 이를 통관한 직접무역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8) Circular는 民國시기부터 通令으로 번역하였고, 그 이전에는 通札라고 번역하였으며, 대부분의 해관 연구서는 通令으로 번역하였다. 일관성의 원칙에서 본고는 通令으로 번역하였다.

9) 상해에 있는 江海關은 중국에서 가장 큰 해관이고, 總稅務司署가 성립되기 전까지 중국의 해관 업무는 상해에서 총관하였다.

10) 海關總署《舊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編譯委員會 編, 『舊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 第1卷: 1861-1910年,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03, 1쪽.

11)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天津港史(古·近代部分)』(李華彬, 人民交通出版社, 1986年), 『天津海關志』(天津海關編志室 編著, 天津海關編志室, 1993), 『近代天津對外貿易研究』(姚洪卓 著, 天津市國際貿易學會編, 天津古籍出版社, 2011. 11版은 93版의 修訂版이다) 등이 있다.

12) 대표적인 연구로는 『近代环渤海地區經濟与社會研究』(張利民 等,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3), 『天津与北方經濟現代化: 1860-1937』(樊如森, 東方出版中心, 2007), 『區域社會与口岸貿易——以天津爲中心: 1867-1931』(佳宏偉, 天津古籍出版社, 2010), 『大灾荒与貿易(1867-1931年)——以天津口岸爲中心』(佳宏偉, 『近代史研究』, 2008-4), 「近代 中國 對外貿易을 통해 본 中國經濟——對外貿易이 天津과 背後地 市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강경락, 『中國近現代史研究』 37, 2008), 「근대무역과 화북경제권의 변화」(강경락, 『中國近現代史研究』 49, 2011) 등이 있다.

13) 김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 26, 2014, 135-136쪽.

I. 天津의 貿易 現象의 諸 類型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진해관을 개설하면서 천진의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해관도 전쟁배상금 조달처 중의 하나였지만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수도 놀랄만한 액수였다. 천진은 해관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무역은 천진의 명맥이 되었다. “The Chinese Official Directory”에 따르면 1866년의 田賦는 1,334,475兩, 鹽課稅는 437,499兩, 海關稅는 515,557.750兩¹⁴⁾이다.¹⁵⁾ 개항 6년차인 1866년의 海關稅는 田賦 다음으로 큰 세수 내원이 되었고 鹽課稅를 제외하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이와 같이 천진무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북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써 수도와 내륙을 이어주는 물자운송의 요충지이다. 1861년 山西와 直隸의 인구는¹⁶⁾ 약 3800만 명이었는데 같은 시기 프랑스 전국을 능가할 만큼¹⁷⁾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직예의 동북은 滿洲, 중서부는 몽골, 더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이다. 만주에는 牛莊海關¹⁸⁾이 있어 천진과의 무역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천진과 만주간의 국산품 거래는 여전히 존재했다. 몽골은 시베리아와 직예 사이에 있는 관계로 중국-러시아무역 ‘중계지대’의 역할을 하였다. 시베리아의 국산품(주로 絨)은 天津港을 거쳐 해로로 중국 남부 지방에 수출되는 경우도 있었고¹⁹⁾ 黑龍江을 통해 직접 바다로 나간 이후 천진항을 거쳐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중국 내륙의 국산품(주로 茶)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에 수출되었다.²⁰⁾ 천진은 중계항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海陸運輸를 이어놓을 수 있었다.

천진은 북경, 직예, 산서를 제외한 내륙지역과도 상품거래가 있었다. “간혹 천진의 일부 수입품이 黃河를 넘어 陝西로 운반”²¹⁾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천진에서 豫北으로 운반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하지만 의외로 “천진의 화물이 魯西로 운반”²²⁾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동의 서부가 군산에 의해 東海關과 자연적으로 격리되어 발생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²³⁾

14) 541,335,637行平化寶銀을 兩으로 환산하여 얻은 것이다. 1875년부터 모든 해관에서 關平銀을 회계단위로 사용하였고, 1930년 새로운 海關金單位가 출현하기 전까지 지속된다. 천진은 1874년부터 關平銀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行平化寶銀을 회계단위로 하였다.

15)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6”, p. 39. 이하 진해관무역 연간보고서는 『津海關年報檔案彙編』(內刊本, 1993)의 페이지를 따르고, 보고서 제목은 “Report, 연도”로 약칭한다.

16) 山西의 인구는 약 1100여만 명이었고 直隸의 인구는 약 2700여만 명이었다.

17) “Report, 1866”, p. 21.

18) 실제 위치는 營口에 있었다. “天津條約”에서 牛莊으로 정하였는데 改約할 수 없었기에 해관명을 여전히 牛莊海關으로 정하였다. 민국시기에 山海關으로 개명하였고 일본이 침점하면서 營口海關으로 재차 개명하였다.

19) 김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26, 2014, 128쪽의 <도표 2> 중국과 러시아의 絨·茶 무역 참조.

20) 김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26, 2014, 128쪽의 <도표 2> 중국과 러시아의 絨·茶 무역 참조.

21) “Report, 1866”, p. 21.

22) “Report, 1866”, p. 21.

이는 진해관이 일반 해관에 비해 훨씬 넓은 판로망을 형성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천진항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1860년대의 천진은 근대 은행이 없었다. 더구나 수출입무역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수입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천진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²⁴⁾ 영국 은행가들은 “천진은 개항 초기에 외국 은행의 결핍으로 천진에서 수입무역이 진행될 때 화물을 근거로 대부금을 낼 수가 없었다”²⁵⁾고 한다.

화물선이 돌아갈 때 실을 화물을 구하기 힘든 것은 또 하나의 큰 문제였다. 화북시장은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편도운송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따라서 실제 운송원가는 운송거리 대비 고가였다. 상해와 福州의 경우 화물선이 돌아갈 때 茶와 같은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던²⁶⁾ 것에 비하면 항구도시로써 천진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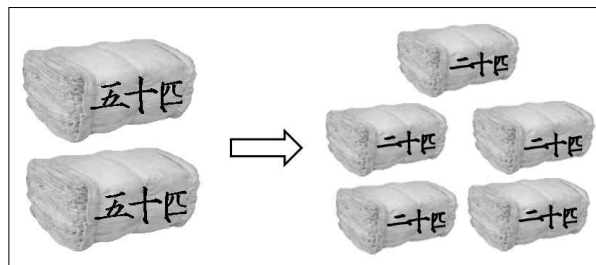
이상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개항 초기 천진항의 장단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으로 인해 어떠한 무역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자.

1. 내지운송비용 수준: 그레이 셔팅즈를 중심으로

진해관에서 수입한 상품의 가장 큰 판로는 산서의 太谷과 太原이다. 면화제품은 천진의 주요 수입품종인데, 그레이 셔팅즈(Grey Shirtings)가 대표상품이다. 조지 휴스(George Hughes)와 토마스 딕(Thomas Dick)은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천진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그레이 셔팅즈의 포장단위는 50匹/包이다. 晉商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을 작게 하였다. 즉 2包를 뜯어 5包로 재포장하였다. 결국 새로 포장한 후 포장단위는 20匹/包로 된다.

<도표 1> 天津-山西 Grey Shirtings 무역의 화물 재포장 설명도



상인들이 화물을 子牙河를 타고 小范으로 운송하는데 약 2일이 소요된다. 소범에서 화물을 큰 화물차에 적재하는데 적재량은 20包/車이다. 다음 육로를 통해 산서와 직예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獲鹿縣으로 운송한다. 산서는 큰 화물차가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상인들의 중계역이 되었던 것이다. 碛硯현에 도착한 후 노새나 낙타를 이용하여 太谷縣까지 운송한다. 노정의 마지막 40-50마일은 작은 驢車를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었지만 적재량은 5包/車밖에 안 되었다. 天津-太谷(450마일) 운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Report, 1866", p. 21.

24) 김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26, 2014, 141쪽의 <표 3> 開港 初期 天津 수출입무역통계표 참조.

25) "Report, 1866", p. 43.

26) "Report, 1866", p. 43.

〈도표 2〉 1868년 天津—太谷 Grey Shirtings 무역 명세표

전 진 과 정	원래 포장단위	50匹/包	天津 ↓ 小范	포장단위	20匹/包
	노정	약 450마일		운송도구	선박
	운송시간	13일		적재량	大
	운송과정	天津→小范→ 獲鹿→太谷		운송시간	2일
	운송료	8兩/包 1包=20匹	小范 ↓ 獲鹿	포장단위	20匹/包
	원래 포장으로 추산한 운송료	20兩/包 1包=50匹		운송도구	큰 화물차
	천진에서 큰 포장의 평균가격	115兩/包		적재량	20包/車
	운송료	115兩/包		운송시간	4일
	태곡에서 평균가격 중 운송료의 비율	최대 15%	獲鹿에서부 터 太谷에 이르기 전 40~50마일 까지	포장단위	20匹/包
	운송 도중 세관의 개수	1		운송도구	노새, 낙타
	세관의 通過稅	5文/匹		적재량	小
	원래 포장으로 추산한 통과세	250文/包 1包=50匹		운송시간	7일
	당시의 銀兩銅錢比價로 환산한 통과세	0.2兩 안됨		운송도구	작은 驢車
				적재량	5包/車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8」을 근거로 작성

<도표 2>에 따르면 그레이 셔팅즈를 천진에서 태곡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4일이고, 운송료는 상품원가의 15%에 달했다.²⁷⁾ 토마스 덕의 기록에 따르면 天津-太原도 天津-太谷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²⁸⁾ 천진의 내지 운송조건은 장강 중하류지역과 북건 대비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의 영향으로 운송량이 많을수록 단위운송료가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설명하면 천진의 무역거래도시 중 彭德府와 東昌府는 수로를 통해 운송하여 운송료가 비교적 저렴했다. 다만 무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관계로 천진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 천진-미국무역: 드릴즈를 중심으로

면화제품은 천진-미국무역의 대표품종인데, 진해관을 통한 면화제품의 대표상품은 무명이다. 수입무명의 대부분을 차지한 드릴즈(Drills)는 일종의 능직 방식으로 짠 무명인데 크게 미국산, 영국산, 네덜란드산이 있었다. 드릴즈 순수입량 통계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7) $\pi \equiv \frac{n}{n+m+\beta}$ π : 운송료 점유율 n : 원래 포장으로 추산한 운송료
 β : 당시의 시세로 환산한 통과세 m : 천진에서 큰 포장의 평균가격

28) 천진에서 태원까지의 거리는 약 500마일이다. 최근 천진의 그레이 셔팅즈의 평균가격은 3.1-3.2兩/匹이다. ... 이 상품을 산서로 운송하려면 먼저 수로를 통해 천진에서 약 120마일 떨어져있는 小范으로 운송한다. 다음 육로로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후 노새를 이용하여 山隘을 넘어 산서에까지 이른다. 이에 운송료가 매우 높았고, 그레이 셔팅즈의 경우 2錢/匹을 넘는 수준이었다. 내지세와 관세를 제외한 천진에서 징수하는 規費은 도합 8分9厘였고 이 금액에는 小范의 橋捐 12厘도 포함되어 있다. “Report, 1867”, p. 63.

〈도표 3〉 1861-1869년 津海關 통관 Drills 순수입량 통계표²⁹⁾

단위: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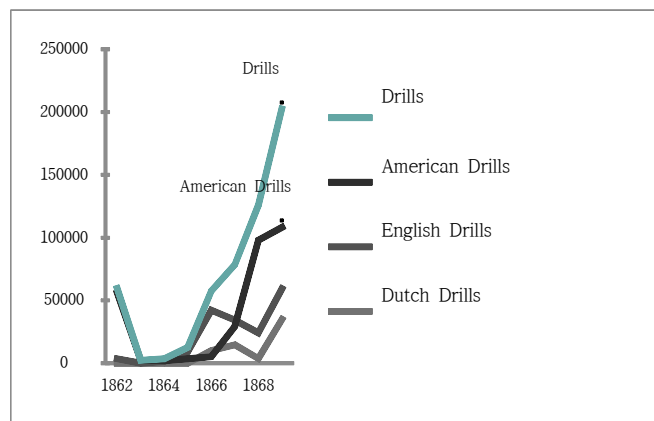
년도	미국산 드릴즈 (American Drills)	영국산 드릴즈 (English Drills)	네덜란드산 드릴즈 (Dutch Drills)	합계
1861	92,615			92,615
1862	56,079	3,599	0	59,678
1863	2,395	0	0	2,395
1864	1,940	1,547	0	3,487
1865	3,530	9,074	0	12,604
1866	5,209	42,216	10,145	57,570
1867	29,366	34,336	14,765	78,467
1868	97,879	24,232	3,740	125,851
1869	108,229	59,270	34,918	202,417

1865-1869년의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와
1866-1869년의 「Return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을
근거로 일부 수치를 고증하여 작성

<도표 3>에 따르면 1861년은 나라별로 통계를 내지 않았다. 이에 <도표 3>의 1862-1869년 수치로 통계 그래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1861-1869년 津海關 통관 Drills 순수입량 통계 그래프

단위: Pieces



<도표 4>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드릴즈 무역은 일정한 패턴이 없다. 그러나 미국 드릴즈 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드릴즈 무역을 좌우하였다. 또한 미국산 드릴즈의 무역추세는 대체로 M자형을 나타내며 변곡점은 곧 미국 남북전쟁이 종결되기 전후이다. 이는 우연의 일치

29) <도표 3>은 사료를 고증하여 얻은 수치이다. 통계사료에 따르면 1862년 미국산 드릴즈는 56,076(1번) 혹은 56,079(6번)이고, 1868년 영국산 드릴즈는 24,023(1번) 혹은 24,232(3번)이다. '1862년 미국산 드릴즈 56,076'과 '1868년 영국산 드릴즈 24,023'은 무역보고서의 기록이고, 단 한 번의 기록밖에 없다. 또한 '1862년 미국산 드릴즈 56,076'의 '6'과 '1862년 미국산 드릴즈 56,079'의 '9'의 차이점, 그리고 '1868년 영국산 드릴즈 24,023'의 '023'과 '1868년 영국산 드릴즈 24,232'의 '232'의 차이점으로부터 볼 때 무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자료의 수치를 잘못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1862년 미국산 드릴즈 56,079'과 '1868년 영국산 드릴즈 24,232'를 통계표에 적용한다.

가 아니며 다른 상품을 분석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정치의 안정은 무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860년대 영국은 홍콩·상해·천진을 동양의 본거지로 삼았고, 독일은 통일 이후 상해·芝罘·천진을 본거지로 삼았다. 미국이 통일 이후 천진무역에 가입함에 따라 삼국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천진의 도시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3. 관세와 무역량의 관계: 免重征執照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역의 증가와 관세의 증가는 동반되며 정비례 관계이지만, 천진의 관세는 무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1867-1868년 진해관을 통과한 상품의 관세와 무역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1867년	1868년
관 세	수입 관세	아편 관세	行化		216,263,700
		기타	行化		68,356,235
	수출 관세		行化		34,088,219
	재수출 관세 (연해무역 관세)		行化		68,058,630
	噸稅(船鈔)		行化		3,838,500
	관세 총액		行化	411,297,829	390,605,284
무 역 액	수입액		行化	13,497,097	16,437,708
			£	4,274,080	5,205,274
	수출액		行化	1,223,197	946,165
			£	387,345	299,618
	합계		行化	14,720,294	17,383,873
			£	4,661,425	5,504,892
免重征執照			개수	1908	5099

1867-1868년의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과
1867-1868년의 「Return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을
근거로 일부 수치를 고증하여 작성

<도표 5>에 따르면 1868년의 무역액은 1867년에 비해 2,663,579行化(£843,467) 증가했지만 관세는 오히려 20,692,545行化 감소하였다. ‘貿增稅減’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免重征執照’의 폭증이었다. 면증정집조란 수입품을 어떠한 원인으로 다른 개항장이나 외국으로 운송 시 재차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이다.³⁰⁾ 1867년부터 1868년의 1년간에 무려 3,191

30) 免重征執照의 기원은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715년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는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시도하였다. 청조 대표(粵海關監督)와 영국 대표(海關大班)는 8가지 약정을 맺었는데 그중 네 번째 약정은 “팔지 못한 상품과 商館의 비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면세한다”(Anber, “China: An Outline”, p. 153. Quoted from. H. B.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1, 1910, pp. 64-65)는 내용이다. 원래의 약정은 모두 아홉 항목이었는데 9번째 항목을 월해관감독이 거절하였다. 체결한 여덟 개의 항목에 대한 실시여부 역시 증명이 어렵다.(H. B.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1, 1910, p. 65) 결과적으로 이는 최초의 免重征執照의 특성을 가진 형태이다. 비록 1852년 러더퍼드 올콕(Rutherford Alcock)이 이미 상해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였지만(Stanley F. Wright 著, 陳敦才·陸琢成 譯, 『赫德與中國海關』(上冊), 廈門: 廈門大

개 증가되었고, 면허증을 갖고 진행된 무역 역시 폭증하였다. 비록 1867년 이미 직접무역이 시행되었지만 천진무역은 여전히 상해무역의 일부분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4. 子口半稅에 기인된 재수출무역

재수출무역은 화물을 수입한 후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廣州의 재수출무역에는 광주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후 다시 홍콩에서 광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내지로 운송하는 과정에 자구반세가 적용되었고 1860년대의 홍콩은 외국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와 홍콩을 왕복하는데 들어가는 운송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운송가격은 광주에서 직접 내지로 운송하는 것보다 저렴했던 것이다.

천진에는 ‘천진-홍콩-기타 개항장’의 경우가 존재했다.³¹⁾ “원래 화물을 이곳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적합한 소비시장을 개척하지 못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운송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³²⁾ 홍콩을 거친 이유 역시 자구반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천진에는 ‘광주-외국 개항장-광주’와 같은 유형인 ‘천진-외국 개항장-천진’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천진은 광주처럼 가까운 ‘외국 개항장’이 없었고, 1883년 인천이 개항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5. 개항 초기 천진무역의 돌파구

재수출무역은 교통망과 물류망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도시가 용자, 투자 유치 등의 경제활동을 할 때 그 지역의 경제 잠재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면에서 상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상 상해의 소비시장규모가 항상 천진보다 컸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재수출무역으로 인해 근대 아시아의 최대 무역중심이 되었다. 진해관을 통관한 국산품은 대부분 상해에서 운송해온 것이고, 수입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상해를 거쳐 운송해온 것이다. 마치 진해관은 강해관의 ‘分關’과 같았다.

1868년 중국-러시아 용 무역은 “None”³³⁾으로 기록되어 있다. “1867년 재해로 인해 사료

學出版社, 1993, 102-110쪽) 이를 免重征執照라고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이었고, 중국과 영국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던 시기에 영국 측에서 중국에 불리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기는 무리였다. 1855년 레이는 새로운 해관규정을 반포하여 최초로 免重征執照를 공식 규정하였다.

31)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7: Part II - The Whole Trade, Foreign and Coastwise”, Vol. 3, pp. 440-451. 이하 진해관무역연간은 『中國舊海關史料: 1859-1948』(京華出版社, 2001)의 페이지를 따르고, 권수와 페이지만 적는다.

32) “Returns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6: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1 to 1866”, Vol. 2, p. 445;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7: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1 to 1867”, Vol. 3, p. 456;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8: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he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1 to 1868”, Vol. 3, p. 670;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9: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he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2 to 1869”, Vol. 4, p. 198.

가격이 폭등하여 운송료가 대폭 늘자 전부 해로를 통해 상해로 운송”³⁴⁾되었기 때문이다. 천진을 거치는 중국-러시아무역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³⁵⁾ 천진지역 자체의 문제로 인해 그 무역이 천진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상해지역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한 해 사이에 한 가지 큰 종류의 무역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이는 천진의 무역구조가 매우 취약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무역은 천진이 없어도 능히 움직일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천진은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진해관을 중심으로 즉, 직접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제무역망을 형성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개항 초기의 천진무역은 상승추세를 보여주었고, 1866년에 정점에 달한 후 평온한 발전을 하였다. 그런데 1866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1867년에 바로 직접무역이 나타났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1866년의 정점은 당시 천진이 갖고 있는 제 조건하에서 무역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더욱 합리적인 무역방식이 출현하기 마련이다.

II. 直接貿易의 方案과 經濟的 效果

직접무역은 중계항을 거치지 않는 두 나라 항구간의 직접적인 무역거래방식이다. 개항 초기의 천진항은 大沽垵로 인해 대형 운선이 정박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직접무역의 규모가 매우 작았다.

대고패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우선 좁은 의미로는 하구에 존재하는 길이 약 3마일의 大沽沙航道を 중심으로 양 옆에 형성된 자연적인 퇴적물을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로는 渤海灣 일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1860년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대형 운선이 항구에서 7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정박해야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면적의 퇴적물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하여 攔江沙라고 불렀고, 이 퇴적물이 항로의 양쪽에 독과 같이 쌓여있다고 하여 대고패라고 불렀다. 대고패와 난강사는 같은 뜻으로 혼용할 수 있다. 난강사의 가장 큰 특징은 만조 시에 흘수가 12피트인 선박은 지나갈 수 있지만 13피트부터는 지나가기가 어렵다.³⁶⁾

33) "Report, 1868", p. 82: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8: Summary of the Whole Trade of the Port for 1868", Vol. 3, p. 666: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8: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he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1 to 1868", Vol. 3, p. 670: "Returns of the Trade at the Treaty Ports in China. For the Year 1868: Comparative Table of the Value of the Trade, And of the Amount of Tonnage Cleared, In Each of the Years from 1862 to 1869", Vol. 4, p. 198.

34) "Report, 1868", p. 82.

35) 김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26, 2014, 130 쪽의 <도표 3> 漢口→天津→Kiachta→Siberia→Moscow 茶 貿易 통계표 참조.

36) "Report, 1866", p. 43.

대고패 문제는 직접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형 운선의 항구정박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항로를 깊게 파는 방안

대형 운선이 大沽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식은 항로를 깊게 파는 것이다. 이 공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수의 흐름과 항로가 직각을 이루어 만조 시에는 南流, 간조 시에는 北流하여 변수가 많았다.³⁷⁾ 理船廳의 헨콕(Hancock) 선장은 최초로 대고패의 풍향과 수심에 관한 책을 편찬했는데, 『潮汐與風向日誌』는 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사실 “대고패 해수의 깊이가 3-4피트만 더 깊어진다면 거의 모든 운선과 범선이 지나갈 수 있다.”³⁸⁾ 또한 서방에서는 이미 이런 공사를 완성했고,³⁹⁾ 청조는 이 공사에 대해 반대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공사비용만이 문제시 되었던 것이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의 과학기술과 인력으로 항로의 준설은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준설공사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항로를 준설해서 무역량을 높이려는 것보다는 단지 수출입 원가를 낮추려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고,⁴⁰⁾ 운선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결국 이 방안은 재정예산과 기획방안마저 논의된 적 없는⁴¹⁾ 탁상공론일 뿐이었다.

2. 작은 배로 운송하는 방안

상대적으로 작은 배란 적재량이 400-500톤이고, 만선 시의 흘수가 12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배이다.⁴²⁾ 진해관보고서에는, “1867년 10월 영국 리버풀에서 출발한 더엠프리스(The Empress, 461t)는 직항하여 천진항에 정박”⁴³⁾했고 “또 한척의 선박이 大沽로 오는 도중”⁴⁴⁾이란 내용이 있다. 해관보고서는 한 해의 무역을 총괄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써 상세한 사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게다가 이 내용의 뒤에는 “특별히 부가 설명”⁴⁵⁾이라고 적혀 있다. 운선이 천진항에 직접 정박한 이 사건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이 두 선박의 상황은 최초의 표본이 되었다. 비록 이번의 항해는 한 차례의 무역에 불과하지만, 그 무역 결과의 영향력은 중국 남북사이의 무역질서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북방이 남방에 의거하지 않고도 무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867년의 두 차례 직항은 모두 비교적 좋은 결과를

37) “Report, 1868”, p. 94.

38) “Report, 1867”, p. 70.

39) “Report, 1868”, p. 94.

40) “Report, 1866”, p. 43.

41) “Report, 1866”, p. 43.

42) “Report, 1866”, p. 43.

43) “Report, 1867”, p. 62.

44) “Report, 1867”, p. 62.

45) “Report, 1867”, p. 62.

얻었다.

1868년 또 3척의 운선이 영국에서 출발하여 천진항에 정박했다.⁴⁶⁾ “이런 무역모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언론에 따르면, 직접무역의 결과는 그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⁴⁷⁾ 그 이후 10월 26일 “競賽”, 11월 말 “Ada”, 12월 25일 “Helena”, 그리고 “Eleanor” 등 4척의 선박이 영국에서 출항했다. 직접무역 선박은 1867년 이후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바다를 드나드는 400-500톤급 운선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은 배로 운송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가치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 방안은 국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뿐이었다.

3.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안

대형 선박이 대고패 밖에 도착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항구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운선이 외국에서 출발하여 대고패 밖에 도착한 후 바지선이 항구와 운선 사이를 오가면서 화물을 운송하여 난강사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후의 여하에 따라 화물을 내리는 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도 있었다.⁴⁸⁾

<도표 6>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안 설명도



개항 초기에 이 방안은 직접무역에 도입된 적은 없었지만, 연해무역에 종사하던 대형 선박의 바지선 운송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직접무역이든 연해무역이든 대형 선박이 대고패를 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866년 연해무역에 종사하던 화물선이 천진에 오고 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Report, 1868”, p. 78, p. 80.

47) “Report, 1868”, p. 89.

48) “Report, 1866”, p. 43.

〈도표 7〉 1866년 津海關 통관 선박 통계표⁴⁹⁾

		윤선			범선		합계	
		선박수	톤수	홀수	선박수	톤수	선박수	톤수
전체 선박	영국	67	28,082	-	46	16,211	113	44,293
	미국	8	4,432	-	15	3,915	23	8,347
	독일	1	642	-	116	26,418	117	27,060
	포르투갈	1	172	-	-	-	1	172
	덴마크	-	-	-	14	2,762	14	2,762
	프랑스	-	-	-	11	1,733	11	1,733
	시암	-	-	-	7	2,455	7	2,455
	네덜란드	-	-	-	5	1,325	5	1,325
	스웨덴	-	-	-	2	447	2	447
	오스트리아	-	-	-	2	408	2	408
	러시아	-	-	-	1	257	1	257
	합계	77	33,328	-	219	55,931	296	89,259
정박 못한 선박	Min	-	630	14	-	-	-	630
	Monarchy	-	701	14	-	-	-	701
	Anti Podes	-	593	13	-	-	-	593
	Sir W. F. Willams	-	897	13.5	-	-	-	897
	Lansdowne	-	715	14	-	-	-	715
	Naomi	-	709	14	-	-	-	709
	Peterborough	-	560	14	-	-	-	560
	Willy	-	881	14	-	-	-	881
	합계	8	5,686	-	-	-	8	5,686
	평균치		710.75	13.82	-	-	-	710.75
정박 못한 선박 / 전체 선박		10.39%	7.06%	-	-	-	2.70%	16.37%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6」과 「Return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6」을 근거로 일부 수치를 고증하여 작성

<도표 7>에 따르면 1866년 천진에 도착한 선박 중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대형 선박 수는 2.70%밖에 안 되고, 톤수도 6.37%밖에 안 된다. 윤선만 통계하여도 천진에 도착한 선박 중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대형 선박수와 톤수는 각각 10.39%, 17.06%밖에 안 된다. 이는 바지선 운송의 위험성, 화물에 주는 손상 등의 수많은 장벽이 존재했음을 잘 보여준다.

“Min”, “Monarchy”, “Anti Podes”, “Sir W. F. Willams”, “Lansdowne”, “Lansdowne”, “Naomi”, “Peterborough”, “Willy” 등 8척의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선박은 순차적으로 27, 41, 40, 40, 37, 34, 28, 38일 대고패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 평균치는 35.63일인데 선박의 톤수와 비교할 때 이 정도의 정박일수는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이는 진해관과 천진 상인은 물론, 영국 상인의 입장에서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비록 연해무역에

49) 당시의 미국과 독일은 현재와 같은 통일(합병, 연맹)된 나라가 아니었지만, ‘동일한 역사의 한 나라’를 나타내기 위하여 통합하여 통계하였다. 미국의 선박 수는 하와이의 범선 3척도 포함되었다. 독일의 선박 수는 부르크의 윤선 1척과 범선 45척, 프로이센의 범선 37척, 브레멘의 범선 27척, 하노버의 범선 3척, 올덴부르크의 범선 3척, 메클렌부르크의 범선 1척 등을 더하여 얻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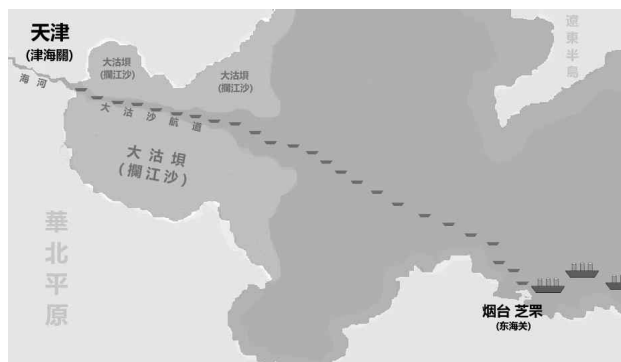
는 이런 방식이 존재했지만 향후 항구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거나, 大沽沙航道の 준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또는 기타 더 좋은 방안 등이 출현한다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고패 밖에 도착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안은 직접무역에 적용되어도, 국내 환경보다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른 국제 환경 속에서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4) 중계항을 이용하는 방안

천진-영국 무역에서 芝罘를 중계항구로 삼는 것이다. 지부는 煙台의 행정범위내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육계도이다. 천진과 지부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화물이 지부에 도착한 후 상대적으로 쉽게 천진으로 재운송할 수 있다. 그 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芝罘港에 대형 선박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도표 8> 중계항을 이용하는 방안 설명도



1860년대에 화물을 “영국에서 연태까지 직접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영국에서 상해보다 3일 더 필요했고, 선박이 지부항에 들어오는 것은 장강 하구를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⁵⁰⁾ 또한 “연태에서 한창 건설중인 燈台에도 곧 조명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다.”⁵¹⁾ 지부는 중계항구로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연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부에서 작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천진으로 운송할 경우, 운송료가 위에서 언급한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식과 비슷했다. 다만 운송시간이 더 길었고, 大沽口에서 대고패 밖 대형 운선이 정박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78마일이지만 대고구에서 지부까지의 거리는 273마일이었다.⁵²⁾

항로를 깊게 파는 방안이 시행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계항을 이용하는 방안은 대규모로 채택할 가치가 있었다. 비록 원가가 제일 저렴한 방안은 아니었지만 ‘영국-상해-천진’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이 방안은 완전한 직접무역은 아니지만 직접무역의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간접무역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그렇다면 간접무역 대비 직접무역의 가치는 무엇이고, 개항 초기의 직접무역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직접무역은 상품원가를 줄임으로써 단위 이윤을 높이거나, 상품단가를 낮춰 총매출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총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천진 직접무역의 가치는 상품원가 인하와 운송시간 단축이다. 1860년대 초 상해를 거쳐 천진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서양⁵³⁾에서 상해

50) “Report, 1866”, p. 43.

51) “Report, 1866”, p. 43.

52) “Report, 1866”, p. 45.

까지 운송하는 비용보다 더 높았고, 영국에서 천진까지 직행하는 시간은 상해까지 직행하는 시간보다 5일 더 걸렸다.⁵⁴⁾ 하지만 영국에서 상해로 직행한다면 또 다시 상해에서 천진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분명히 5일은 더 넘었던 것이다.

천진-영국 직접무역은 출발항구와 도착항구 사이의 직행을 실현함으로써 운송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시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운송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당시 해관관원과 상인들이 진해관을 통관한 대표상품인 그레이 셔팅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9〉 Grey Shirtings 무역의 ‘영국-天津’과 ‘영국-上海-天津’의 비교표

비교 항목			영국-上海-天津				영국-天津	
			영국-上海		上海-天津			
			운송료	비중	운송료	비중	운송료	비중
200匹 /Shipping Ton								
상품 단가(1匹)			2.5兩 : 15/10d					
상품 단가(200匹)			500兩 : £160					
단위가격 = 1 Shipping Ton 상품가격								
CIF	CFR	운송단가	6.5625兩 (£2 2/-)	1.3125%	9.0000兩 (£2 17/7d)	1.8000%	7.5000兩 (£2 8/-)	1.5000%
		하역& dock dues	-	-	3.2500兩 (£1 2/-)	0.6500%	-	-
		합계	6.5625兩 (£2 2/-)	1.3125%	12.2500兩 (£3 19/7d)	2.4500%	7.5000兩 (£2 8/-)	1.5000%
	보험		12.5000兩 (£4)	2.5000%	3.7500兩 (£1 2/10d)	0.7500%	12.5000兩 (£4)	2.5000%
	합계		19.0625兩 (£6 2/-)	3.8125%	16.0000兩 (£5 2/5d)	3.2000%	20.0000兩 (£6 8/-)	4.0000%
	기타 비용 (進口正稅)		-	-	16.0000兩 (£5 2/5d)	3.2000%	-	-
최종 합계			19.0625兩 (£6 2/-)	3.8125%	32.0000兩 (£10 4/10d)	6.4000%	20.0000兩 (£6 8/-)	4.0000%

「Report of the Trade at the Port of Tientsin, For the Year

1866」을 근거로 일부 수치를 고증하여 작성

<도표 9>에 따르면 그레이 셔팅즈를 ‘영국-상해-천진’할 때 단위 원가는 51.0625兩(£16 6/10d)이고, ‘영국-천진’할 때에는 20.0000兩(£6 8/-)인데, 후자는 전자보다 31.0625兩(£9 18/10d) 저렴하다. ‘영국-상해-천진’의 운송료는 상품원가의 10.2125%를 점했고, ‘영국-천진’은 4.0000%를 점했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6.2125% 낮았다.

이와 같이 ‘영국-상해→천진’ 단위원가는 ‘영국-천진’ 단위원가의 1.5배를 넘는 매우 큰 가격 차이를 보여준다. 그레이 셔팅즈는 가장 전형적인 수입품인 만큼 전체 무역상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것이 ‘영국-천진’무역 즉, 직접무역의 가치이다.

직접무역을 진행함으로써 물류 원가를 줄일 뿐 아니라 천진의 기업이 상해의 分行·代理行을 철회하여 무역 원가를 줄일 수도 있었다. 당시 강해관에서 수입한 면화제품과 용제품의 절반은 진해관과 동해관으로 운송되었다. 그중 천진으로 운송된 양은 천진 면·용 무역의 약 4분의

53)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19세기 중후반 사료들에서의 서방은 보통 영국을 가리킨다.

54) “Report, 1866”, p. 43.

3을 차지했다. 따라서 상가들은 상해에 分行·代理行을 둘 필요가 있었는데, 分行을 둠으로써 인력의 증가와 수속의 번잡함으로 인해 상품원가가 높아져 결국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代理行을 거친다는 것은 내국상인이나 외국상인의 중개서비스를 통해 무역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상품원가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기업은 운송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경영 원가도 높아지는 이중원가상승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난강사이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운하 수위의 문제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漕運에 큰 변수를 가져왔으며 청조 통치의 불안정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이르러 운하 조운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정은 해로조운을 제안하여 도광 연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해로조운이 대규모로 실행되었던 적은 없다.

1867년 청조는 홍콩에 가서 漕糧을 조달하였는데 난강사를 지날 수 있는 선박을 2척⁵⁵⁾밖에 구하지 못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400-500톤급 운선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조정은 해로조운이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海河 강어귀 준설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묵인했을 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니다.

토마스 딕은 “대고패의 준설공사가 준공된다면 항구물동량(Port Handling Capacity)이 수 년 사이에 2배로 증가될 것”⁵⁶⁾이라고 하였다. 준설공사의 준공은 운송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 항구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어 보다 많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겠지만 ‘埠上卸貨’⁵⁷⁾로 인해 선박의 정박시간은 오히려 ‘駁船卸貨’⁵⁸⁾에 비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바지선은 기타 업종에 종사할 수 있어서 선박들의 융통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그 외에 난강사 문제로 인해 행정적으로도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塘沽 分卡은 정박지에서 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원인으로 “분잡은 매일 한 번씩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해 검사하는 것 외에는 선박에 대한 더 나은 관리와 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⁵⁹⁾ 결국 밀수를 비롯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항 초기에 직접무역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1868년 천진에서 무역을 진행한 선박이 무려 299척이었고, 그중 운선이 139척이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영국에서 천진으로 직접무역을 진행한 3척의 영국선박과 長崎에서 온 9척의 영국선박, 그리고 黑龍江을 통해 온 1척의 러시아선박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해운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었다.⁶⁰⁾

55) “Report, 1867”, p. 70.

56) “Report, 1867”, p. 70.

57) 선박의 화물을 직접 항구 港口陸域(Land Area)로 옮기는 방식

58) 해역에 정박한 대형 선박의 화물을 바지선에 의해 항구로 옮기는 방식

59) “Report, 1868”, p. 94.

60) “Report, 1868”, p. 78.

맺음말

아편전쟁 이후 天津의 해상방위는 청조의 쟁점으로 되었고 해상무역 역시 서방 세계의 이슈가 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해상방위와 해상무역의 게임은 津海關의 개설로 계속되었고 천진은 무역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진해관 개설임무는 하트, 崇厚, 恆琪, 세실 코레아카코프스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트는 개설임무를 통해 조정에서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署總稅務司인 그는 署總稅務司兼江海關稅務司 피츠로이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츠로이를 지방의 稅務司들과 똑같이 취급하였다. 이는 해관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써 진해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천진은 진해관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무역은 천진의 명맥이 되었다. 1866년 海關稅는 田賦 다음으로 큰 세수내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천진무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진 자체 및 직예·북경과의 자연·인문 지리적 관계, 광범위한 판로, 그리고 중계항의 역할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은행이 없고, 수출입무역이 균형적이지 못하며, 더구나 편운송현상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상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개항 초기 천진항의 장단점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장단점으로 인해 어떠한 무역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대표수입상품 그레이 셔팅즈의 내지운송과정을 분석한 결과 진해관을 통관한 상품의 내지 운송조건은 남방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한계 효용의 영향으로 운송량이 많을수록 단위운송료가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면화수입품의 대표상품 드릴즈를 분석한 결과 미국 드릴즈 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드릴즈 무역을 좌우하였다. 또한 미국산 드릴즈의 무역추세는 남북전쟁의 종결시점을 변곡점으로 꺾이 형태의 발전추세를 보인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다른 상품을 분석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미국이 통일 이후 천진무역에 가입함에 따라 영국·독일·미국 사이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천진의 도시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免重征執照'의 폭증으로 인해 천진의 관세는 무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비록 1867년 이미 직접무역이 시행되었지만 천진무역은 여전히 상해무역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천진에는 子口半稅에 기인된 재수출무역 즉 '천진-홍콩-기타개항장'의 경우가 존재했다. 하지만 천진에는 '광주-외국-광주'와 같은 유형인 '천진-외국-천진'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천진은 광주처럼 가까운 '외국개항장'이 없었고, 1883년 인천이 개항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진해관을 통관한 국산품은 대부분 상해에서 운송해온 것이고, 수입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상해를 거쳐 천진에 운송해온 것이다. 진해관은 강해관의 일종 '分關'과 같았다. 1868년 중국-러시아 용 무역은 천진지역에 문제가 생긴 탓으로 천진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천진의 무역구조가 매우 취약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무역은 천진이 없어도 능히 움직일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천진은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진해관을 중심으로 즉, 직접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제무역망을 형성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개항 초기의 무역은 상승추세를 보여주었고, 1866년에 정점에 달한 후 평온한 발전을 하였다. 그런데 1866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1867년에 바로 직접무역이 나타났다. 1866년의 정점은 당시 천진이 갖고 있는 제 조건하에서 무역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더욱 합리적인 무역방식이 출현하기 마련이다.

大沽壩 문제는 직접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형 운선의 항구정박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1)항로를 깊게 파는 방안 (2)작은 배로 운송하는 방안 (3)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안 (4)중계항을 이용하는 방안 등의 네 가지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1860년대의 상황에서 방안 (4)는 대규모로 채택할 가치가 있었다. 천진과 지부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화물이 지부에 도착한 후 상대적으로 쉽게 천진으로 재운송할 수 있었으며 지부항은 대형 선박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원가가 제일 저렴한 방안은 아니었지만 '영국-상해-천진' 루트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이 방안은 완전한 직접무역은 아니지만 직접무역의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간접무역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천진 직접무역의 가치는 상품원가 인하와 운송시간 단축이다. 1860년대 초 상해를 거쳐 천진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영국에서 상해까지 운송하는 비용보다 더욱 높았고, 영국에서 천진까지의 직행시간은 상해까지 직행하는 시간보다 5일 더 필요했다. 하지만 영국에서 상해로 직행한다면 또 다시 상해에서 천진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분명히 5일은 더 넘었던 것이다.

천진-영국 직접무역은 출발항구와 도착항구 사이의 직행을 실현함으로써 운송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시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운송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레이 셔팅즈 무역을 분석한 결과 '영국-상해→천진' 단위원가는 '영국-천진' 단위원가의 1.5배를 넘는 매우 큰 가격 차이를 보여준다. 그레이 셔팅즈는 가장 전형적인 수입품인 만큼 전체 무역상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 외에 직접무역을 진행함으로써 천진의 기업이 상해의 分行·代理行을 철회하여 무역 원가를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攔江沙이다. 朝廷은 해로조운이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海河 강어귀 준설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 외에 난강사 문제로 인해 행정상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塘沽 分卡는 정박지에서 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세워져 있었다. 결국 밀수를 비롯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제 원인으로 개항 초기에 직접무역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1868년 천진에서 무역을 진행한 운선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13척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해운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었다. 연해무역은 규모가 아무리 크고 성장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 항구의 국제화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에 직접무역과 大沽沙 航道の 준설을 둘러싼 진해관의 동향은 천진의 발전과정을 좌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H. B.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1, 1910, Vol. 2, Vol. 3, 1918.
- S. F. Wright, *Hart and the Chinese Customs*: The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1950.
- T. E. Lyons, *China Maritime Customs and China's Trade Statistics, 1859-1948*: Willow Creek of Trumansburg, 2003.
- 김 경, 「開港 初期(1861-1869) 天津의 貿易統計 考究」,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26, 2014.
- 강경락, 「天津과 仁川の 개항장 연구 비교」, 『中國學報』53, 2006.
- 강경락, 「近代 中國 對外貿易을 통해 본 中國經濟—對外貿易이 天津과 背後地 市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37, 2008.
- 강경락, 「근대무역과 화북경제권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研究』49, 2011.
- 吳松弟 整理: 『美国哈佛大学图书馆藏未刊中国舊海关史料: 1860-1949』, 桂林: 廣西師範大學, 2014.
- 中国第二历史档案馆·中国海关总署办公厅 编, 『中国旧海关史料: 1859-1948』, 北京: 京华出版社, 2001.
- 海關總署『舊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編譯委員會, 『旧中国海关总税务司署通令选编』, 北京: 中国海关出版社, 2003.
- 姚贤镐 编, 『中国近代对外贸易史资料: 1840-1895』, 北京: 中华书局, 1962.
- 中華書局編輯部 整理, 『筹办夷务始末(咸丰朝)』, 北京: 中华书局, 1979.
- 中华书局编辑部·李书源 整理, 『筹办夷务始末(同治朝)』, 北京: 中华书局, 2008.
- 孔敏 主编, 彭贞媛 副主编, 『南开经济指数资料彙編』,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8.
- 何廉 编, 『中国六十年进出口物量指数物价指数及物物交易指数: 1867-1927』, 天津: 南开大学社会经济研究委员会, 1930.
- 天津社会科学院历史所·天津市档案馆 编, 『津海关年报档案彙編, 1865-1885』, 吴弘明 译, 内刊本, 1993.
- 吴弘明 编译, 『津海关贸易年报: 1865-1946』, 天津: 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 2006.
- 天津市档案馆 编, 『三口通商大臣致津海关税务司札文选编』,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2.
- 天津海关译编委员会 编译, 『津海关史要览』, 北京: 中国海关出版社, 2004.
- 天津市档案馆·天津海关 编, 『津海关秘档解译: 天津近代历史记录』, 北京: 中国海关出版社, 2006.
- 杨瑞六·侯厚培, 『六十五年来中国国际贸易统计』, 南京: 国立中央研究院社会科学研究所, 1931.
- 郑友揆, 『中国的对外贸易和工业发展: 1840-1948』, 程麟荪 译, 上海: 上海社会科学出版社, 1984.
- 黄序鹗, 『海关通志』, 上海: 商务印书馆, 1921.
- 陈诗后, 『中国近代海关史』, 北京: 人民出版社, 2002.
- 陈诗后, 『中国近代海关史问题初探』, 北京: 中国展望出版社, 1987.
- 戴一峰, 『近代中国海关与中国财政』, 厦门: 厦门大学出版社, 1993.

- 连心豪,『中国海关与对外贸易』,长沙:岳麓书社,2004.
- 朱荣基 编著,『近代中国海关及其档案』,深圳:海天出版社,1996.
- 李华彬,『天津港史』古·近代部分,北京:人民交通出版社,1986.
- 天津海关编志室,『天津海关志』,天津:天津海关编志室,1993.
- 天津市国际贸易学会 编,姚洪卓 著,『近代天津对外贸易研究』,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1.
- 樊如森,『天津与北方经济现代化:1860-1937』,上海:东方出版中心,2007.
- 佳宏伟,『区域社会与口岸贸易——以天津为中心:1867-1931』,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0.
- 张利民 等,『近代环渤海地区经济与社会研究』,天津: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2003.
- 陈树生 主编,谭作顺副 主编,『天津市经济地理』,北京:新华出版社,1988.
- 唐巧天,『中国近代贸易埠际转运史上的上海与天津(1866-1919)』,『史林』,2006-1.
- 濱下武志,『中国近代經濟史研究—清末海關財政と開港場市場圈』,東京: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1989.
- 岡本隆司,『近代中国と海關』,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1999.
- 吉澤誠一郎,『天津の近代—清末都市における政治文化と社会統合』,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2002.
- 清国駐屯軍司令部 編,『天津誌』,東京:傳文館,1909.

清末「大清國籍條例」(1909)의 制定과 ‘近代中國’의 構想

韓相協 (漢陽大)

서론

I. 清末 국적문제와 「大清國籍條例」의 제정

II. 비교사적 방법으로 본 「大清國籍條例」

III. 「大清國籍條例」와 근대 중국의 구상

결론

서론

宣統元年(1909) 청조의 「大清國籍條例」 제정은 중국역사상 최초로 ‘中國人’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그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大清國籍條例」는 光緒新政의 핵심기관인 憲政編查館에서 만들어진 근대적 國籍法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中國國籍에 대한 규정 및 ‘入出籍’과 ‘復籍’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의 ‘籍’ 개념은 「大清國籍條例」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이미 고대 중국에서는 가족을 정치적 지배단위로 설정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록한 戶籍을 제작·관리하였다.¹⁾ 하지만 여기에서의 籍은 개인을 국가의 단위로 규정하는 國籍의 의미라기보다는 稅役을 수취하고 사회 기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²⁾ 이러한 중국 전통왕조의 ‘籍’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식은 청조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중국의 ‘籍’ 개념은 조약체제의 등장과 ‘國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중국에 유입되는 清末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두 차례의 중영전쟁을 거쳐 청은 반강제적으로 서구중심의 조약질서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거듭된 패전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적 질서는 붕괴되었다. 이에 중국의 한인관료층 및 일반 지식인들은 ‘瓜分’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청조 정부에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혁방안과 정국구상은 다양했지만,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³⁾ 한편 명치유

1) 중국 고대 호적 및 호구제도의 추이 및 그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신성근, 「兩晉·南朝 初의 兵戶制와 募兵制」, 『中國學報』, 46, 2002, 225-243쪽.; 「三國시대 戶口數의 변화상과 추정」, 『역사문화연구』, 30, 2008, 233-278쪽.; 김경호, 「秦·漢初周邊民族에 대한 戶籍制度의 運營: 秦漢簡牘資料를 中心으로」, 『중국사연구』, 81, 2012, 41-79쪽.; 윤재석, 「秦·漢初의 戶籍制度」, 『중국고중세사연구』, 26, 2011, 61-118쪽.

2) 윤재석, 위 논문, 64쪽.

3) 청말 대표적인 지식인인 양계초는 「新民說」에서, 열강들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계몽하여 新民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청말 지식인들의 근대국민국가 건설 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배경한, 「근현

신 이후 동아시아의 열강으로 성장해가고 있던 일본은 청조에게 앞서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한 성공적인 모델로서 인식되었다.⁴⁾ 특히 청일전쟁(1894-1895)의 패배로 말미암아, 청조 내에서는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전면적인 근대화를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었다.

이에 청조는 군대정비 및 교육제도 개편과 의회개설 준비 등 근대적 제도들을 도입하는 동시에 핵심 보직에 만주족 엘리트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만주족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과정 중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가 바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국적문제였다. 國籍은 국민의 경계와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적 규정인 동시에 징병제 및 선거권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국민의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중국의 통치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청조 또한 국적법을 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光緒新政期 입헌을 위해 설치된 기관인 憲政編查館을 중심으로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이 「大清國籍條例」의 반포로, 기존에 戶籍 즉, 가족 단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의 籍관념과는 별개로 ‘中國籍’이라는 국가 단위의 國籍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國民’이 규정되게 되었다.

「大清國籍條例」에 대한 연구는 디아스포라 문제 및 트랜스내셔널적 방법론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이 증대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중국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許小青, 邱建章, 袁丁 등의 연구자들이 주목된다. 袁丁⁵⁾의 연구는 국적법의 제정배경 및 국적법 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네덜란드와의 교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許小青⁶⁾은 국적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내외의 문제를 정리하고 청 정부의 대응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邱建章⁷⁾은 대청국적조례가 공포된 이후 네덜란드와의 교섭을 통해 「和蘭領地植民地領事條約」이 체결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에서도 위 시기 대청국적조례를 주제로 몇 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재일학자인 閻立은 그의 연구⁸⁾에서 「大清國籍條例」의 제정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그는 청의 국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大清國籍條例」 공포 이후 재일학교의 국적귀속 문제에 주목하여 청조의 대청국적조례 반포가 일본과의 교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반면, 종래의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법에 특화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청조의 국적법에 관한 유일한 선행연구로 평가받는 권영준의 연구⁹⁾ 또한 국적법 제정이 동북지역 越境 조선인들에 끼친 영향에만 주목을 하였으므로, 청조의 국적법 반포라는 사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략하였다.¹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정지호가 진행한 일련의 연구는 한국에서 「大清國籍條例」 자체에 주목한 최초의 연구라 할 것이다. 그는 「大清國籍條例」를 다른 중국 연구들이 주로 애국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청조의 국민국가 건설 시

대 중국의 공화정치와 국민국가의 모색」, 『역사학보』, 200, 2008, 483-516쪽.

4) Douglas R. Reynolds with Carol T. Reynolds, “East Meet East: Chinese discover the modern world in Japan, 1854-1898. A Window on the Intellectu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Modern China.”, *Asia Past & Present*,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4, p. 425.

5) 袁丁, 「光緒初年中荷關於華僑國籍的交涉」, 『華僑華人歷史研究』, 3, 1982.; 「大清國籍條例:中國第一部國籍法的產生」, 『几桂僑史』, 4, 1992.

6) 許小青, 「清季國籍問題與民族國家身分認同」, 『天津社會科學』, 5, 2003, 122-127쪽.

7) 邱建章, 「論晚清政府國籍法的制定及其影響」, 『河南大學學報』, 44-3, 2004, 80-83쪽.

8) 閻立, 「大清國籍條例の制定・施行と日本」, 『大阪経大論集』, 63, 2012, 283-297쪽.

9) 권영준, 「近代 中國의 國籍法과 朝鮮人 歸化政策」, 『한일민족문제연구』, 5, 2003, 37-71쪽.

10) 정지호, 「清末 國籍法制定과 '國民'의 境界」, 『중국사연구』, 52, 2008, 155-182쪽.

도로써 「大清國籍條例」를 설정하여 제정과정 및 국적법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¹¹⁾. 또한 대청국적조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적되는 ‘改籍華人’ 문제에 대해, 당시의 신문·잡지자료를 중심으로 그 실상에 대해 분석하고 국적법 제정에 담긴 청조의 의도를 살펴보았다¹²⁾.

청조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의 맥락에서 ‘국적법’을 분석한 정지호의 시각은 서양에서 시민권 즉,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적법이 탄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청조가 추구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모습이 서양 내지는 일본의 근대국민국가라 한다면, 청조의 국적법 역시 여타 국민국가에서의 국적법과 일정한 유사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생략되어있는 「大清國籍條例」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적법이 중국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어떠한 요소를 참조하여 구성된 법인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필자는 「大清國籍條例」가 立憲을 위한 핵심 기구인 憲政編查館에서 제정된 국적법으로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청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光緒新政의 여러 과제 중 징병제와 의회제 구상과 관련하여 「大清國籍條例」를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청조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국적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I. 清末 국적문제와 「大清國籍條例」의 제정

청조가 개항을 한 이후,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쿨리무역이 합법화 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노동 이주가 급증하는 등 중국에서 해외지역으로의 이민이 활발히 전개되었다.¹³⁾ 역으로, 청조의 동북 지역의 경우 조선인을 비롯한 외부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청조는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인들의 越境이 급증하자 해외 이주 화교에 대한 처리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이주 조선인들을 관리·감독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선정부가 월경 조선인에 대한 귀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청조는 光緒7年(1881) ‘월경조선인에 대한 「入籍令」을 공포하고 월경조선인들에 대해 ‘치발역복(薙髮易服)’을 강요하는 등 월경조선인들에 대한 강력한 귀화정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장 받고자 하였다.¹⁴⁾

이렇듯 중국에서의 인구 유출입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18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청조의 華僑·華人 정책 역시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되었다.¹⁵⁾ 이미 1860년대에도 좌종당 등 일부 양무파 관료들은 재외화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해외의 화교 집단 거주 지역에 영사관

11) 정지호, 위 논문.

12) 정지호, 「清末 改籍華인과 清朝 政府의 對應」, 『중국사연구』, 86, 2013, 253-289쪽.

13) 청조는 원칙적으로 ‘해금’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18세기를 기점으로 南洋群島로 이주하는 화교들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복건성과 광둥성의 경우에는 화교의 해외 왕래가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 허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4) 월경조선인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청조와 조선정부 간의 갈등은 「大清國籍條例」(1909) 반포와 간도협약(1909)을 거쳐 더욱 심화되었으며, 일본의 조선병합 이후에는 재만조선인을 놓고 일본과 청조, 일본과 중화민국의 지방정부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권영준, 위 논문.

15) 19세기 중엽, 화교에 대한 청조의 입장이 전환되게 된 것의 이유로는 해외 화교의 인구 증가, 화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중국 내외의 강렬한 반응, 상업적으로 성장한 화교들에 대한 경제적 기대 등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蔡仁龍, 「印度尼西亞華僑國籍問題的產生及其演變試析」, 『南洋問題』, 1982, 74-105쪽.

을 설치하려 시도하는 등, 재외화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를 제안하였다.¹⁶⁾ 그러나 동시기 일본이 해외에 일본인 거주 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선 것과 달리 청조는 외국과의 교섭이 난항에 부딪혀 실제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해외이주 및 해외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는 慶應2年(1866)부터 「ご印章」이라는 여권을 발급하고, 「海外旅券規則」(1878, 明治11年)¹⁷⁾을 공포하는 등 일련의 실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해외 출입을 관리·통제하려하였다. 하지만 청조의 경우 宣統元年(1909) 「大清國籍條例」 공포 이전까지는 국적의 부여와 상실 등 인구의 유출입 관리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어 지역별로 유동적이었다. 때문에 청조는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나, 인구유출에 대해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중국 내외 지역에서 국적의 이탈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국적관리 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가장 먼저 부각된 곳은 중국의 변경 지역이었다. 청조는 왕조 초기부터 신강지역, 티베트 지역 등 변경지역에 대해 ‘土司’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변경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조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구속력 또한 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세기 초 열강의 중국진출이 가속화 되자 변경지역의 소수민족 국적 이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가 강력한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서북지역에 대한 청조의 통치권은 흔들리게 되었다.¹⁸⁾ 러시아는 몽고지역을 점거한 이후 몽고인들을 러시아적(‘俄籍’)에 入籍시켜 해당 지역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¹⁹⁾ 이처럼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중국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경지역에서의 국적 이탈 현상 또한 심화되었고, 이는 다시 청조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조는 국적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북변경 지역에서의 러시아적 ‘入籍’ 문제를 러시아와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미일. 出使俄國大臣 崇厚가 아뢰었다. 러시아 외무부와伊犁지역과 관련한 조항을 정하였고 約章(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약은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一. 러시아는 장차伊犁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 7개 조는伊犁지역 서쪽지방과 관련이 있으며, 帖克斯川일대 지방은 러시아의 관할 하에 있다. ……(중략)……

三.伊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이미 俄籍에 入籍한 사람 중에는 俄籍을 가지기를 희망하거나, (中國籍으로)으로 復籍하기를 원하니 고르게 조사하여 국적을 다시 부여토록 한다. ……(중략)……

十八. 이 장정을 양국이 비준한 후 각자 장차 조약이 통행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각 지방에 따르도록 한다. 『大清歷朝實錄』, 卷102, 「德宗實錄」, 光緒五年(1879) 己未日.²⁰⁾

16) 1868년 「中美續增條約」(제5조, 6조 내용)에서 지적인 속지주의 원칙과 화교의 개척허용 관련 조항은 이후 외국과의 교섭에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邱建章, 위 논문, 80쪽.

17) 일본정부는 여권의 발급과 「海外旅券規則」 등을 제정하여 구미지역으로 가는 여행객을 관리·통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일본 또한 청조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관리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1918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여권 및 비자가 면제되어 있었다.;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 언론」, 『中國近現代史研究』, 59, 2013, 101-131쪽.

18) 許小青, 위 논문, 125-126쪽.

19) 신강 순무였던 구론(庫倫)은 판사대신에게 보낸 문서에서 몽고인들의 이름과 연령, 재산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가 出籍할 시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咨查入俄籍蒙民」, 『外交報』, 第248期, 宣統元年元月初五日); 許小青, 위 논문, 126쪽, 재인용.

20) 『大清歷朝實錄』, 卷102, 「德宗實錄」, 己未日. 出使俄國大臣崇厚奏 .與俄外部議明交收伊犁. 修定約章. 計訂約十八條. 一.俄國將伊犁交還中國. 其七條所載伊犁西邊. 及帖克斯川一帶地方. 歸俄管理. ……(중략)…… 三.伊犁居民. 已入俄籍者. 願留願遷. 均聽其便. ……(중략)…… 十八.此約兩國批准後.

그러나 러시아와의 교섭으로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정이 발표 되었음에도, 변경지역 중 국민들의 러시아적 ‘入籍’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청조에게도 국적규정을 정비하여 소수 민족의 국적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²¹⁾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華僑·華人들의 외국적 ‘入籍’ 문제 또한 청조가 국적법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정하는데 자극을 주었다. 당시 국제법상 해외화교는 屬地의 법을 준수해야 했으며 청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청국의 국민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 청조에는 국적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었을 뿐더러, 1860년대 청조가 화교정책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지 또한 강하지 않았다.²²⁾ 남양군도 화교 집단 거주 지역 중에서도 국적 귀속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하게 부각된 곳은 바로 자바 지역이었다.²³⁾ 19세기 초 네덜란드 상공업 자본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고, 해당 지역 화교들의 인구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여타 외국인과는 달리 華僑·華人들에 대해서는 사법·납세 등의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²⁴⁾ 이에 주독일·네덜란드대사로 있던 許景澄은 光緒12年(1886)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어 남양군도의 화교들에 대한 조사의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조사 요청 대상 중 화교 2세들은 중국 국적자가 아님을 들어 許景澄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령 자카르타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국적문제를 둘러싸고 청조와 네덜란드 사이에 25년간에 걸친 교섭이 시작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光緒33年(1907) 屬地主義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荷兰新訂爪哇植民籍新律」(이후 「新律」)을 공포하여 네덜란드 속지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네덜란드 국적으로 강제 入籍 시키고자 하였다.²⁵⁾ 해당 지역 화교들은 네덜란드 식민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청 정부에 屬人主義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적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이 사건은 청조의 국적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적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비단 변경지역 및 해외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

各將條約通行曉諭各處地方遵照.

21) 『大清歷朝實錄』, 卷162, 「德宗實錄」, 己未日. 諭軍機大臣等, 金順等奏俄兵撤回日期. 並籌辦邊防一摺. 據稱前駐伊犁之俄國兵隊. 于二月十三日如約撤回. 現在清查居民戶口. 量撥地畝. 仍擬安設管理屯墾等官. 並於沿邊一帶. 添設卡倫. 以資防守等語. 俄兵退出伊犁. 所有善後事宜. 亟應認真經理. 著金順. 升泰斟酌情形. 妥爲籌辦. 應設阿奇木伯克等官. 准其選擇安設. 其霍爾果斯河西交界地方. 新入俄籍人數衆多. 尤應隨時防範. 遇有交涉事件. 持平辦理. 免致別生枝節. 總期撫綏遺黎. 整肅營伍. 以固邊防而維大局. 將此由五百裏各諭令知之.

22) 邱建章, 위 논문, 81쪽.

23) 자바 지역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점령지였다. 독일이 1907년부터 자바화교들을 독일 국적으로 귀화入籍 시키고자 한 것에 반해, 네덜란드는 19세기 중엽부터 해당지역 화교들을 귀화시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Tsai Chutung, "The Chinese Nationality Law, 1909",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2, 2015, p.407.

24)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1854년 해당 지역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관할지역의 거주민들을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華僑는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이권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4등급에 분류되어 사법, 납세 등의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다. ;蔡仁龍, 위 논문, 75쪽.

25) 「荷兰新訂爪哇植民籍新律」은 屬地主義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화교의 국적귀속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和屬東印度籍民條例」, 1910. 第一條. 下列各人, 依和國國籍及居住條例, 并非和蘭人, 屬和蘭國籍民. 1. 生于和屬東印度, 萬里南, 或古拉梭, 其父母在各該地居住, 或父無可考, 其母在該地居住者. 2. 生于和屬東印度, 萬里南或古拉梭, 其父母無可考者. 3. 前兩續籍民之妻, 或寄其再婚之寡婦.; 蔡仁龍, 위 논문, 77쪽.

26) 『大清歷朝實錄』, 卷8, 「恭宗實錄」, 戊午日. 農工商部奏, 和蘭將訂新律. 擬收華僑入籍. 請速定國籍法. 以資抵制. 得旨. 修訂法律大臣會同外務部迅速妥議. 摺包.

니었다. 중국 내지에서도 개항장 지역을 중심으로 改籍華人的 문제가 부각되었다.²⁷⁾ 改籍華人이란 중국내에 거주하면서 外國籍을 취득한 중국인으로서, 19세기 중후반 이후 중국의 주권 침해문제와도 결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²⁸⁾ 중국 내 華인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려 하는 원인은 주로 부세와 役 등 책무의 회피와, 영사재판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에 있었다. 이외에도 해외 출입이 잦은 중국인의 경우 출입국 시 외국인으로서의 편의를 받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국상인과 마찬가지로 낮은 관세와 子口半稅特權 등 상행위에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⁹⁾ 특히 改籍華人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것은 영사재판권과 관련한 부분에서였다. 일부 改籍華人은 영사재판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송사를 유리하게 이끌거나, 타인의 송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다.³⁰⁾ 이러한 일부 改籍華人的 행태는 중국 관원의 통제를 벗어나 외국세력을 등에 업고 중국의 주권(특히 사법권)을 침해한 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³¹⁾ 이러한 改籍華人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역시 청조에게 중국인의 외국국적 획득을 제약할 만한 어떠한 관리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들 改籍華人은 비교적 수월하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속에 改籍華人的 문제 또한 국적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적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주장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북지역의 러시아 入籍문제, 화교 귀속문제 및 改籍華人 문제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청조 내부에서 국적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급격한 진전을 맞게 된 계기는 光緒33年(1907) 閩浙總督 松壽의 상소였다.³²⁾ 改籍華人的 실태와 문제를 지적한 松壽의 보고를 받은 外務部는 民政府에 해외 국적법을 조사하라 지시하였다. 이어서 光緒34年(1908) 청조는 法國公使 劉式訓의 상소³³⁾를 받아들여 국적법을 빠르게 제정(‘국적법의 速定 원칙’)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또 같은 해 10월 8일 出使和國大臣 陸徵祥은 네덜란드가 「新律」을 반포 한 것과 이에 따른 네덜란드 屬地 화교들의 상황과 요구를 조정에 보고하며 재차 국적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⁴⁾ 이에 修訂法律館의 長官이었던 修訂法律大臣 沈家本은 光緒34年

27) 『大清歷朝實錄』, 卷581, 「德宗實錄」, 乙亥日. 閩浙總督松壽奏, …… (중략) …… 閩民報入外籍. 雜居內地. 究詰無從. 請飭部倭. 考中西法律. 明定國籍條例. 通行遵守. 下部議. 摺包.

28) 정지호, 위 논문 262쪽.

29) 초기에는 子口半稅特權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 양행에 금전을 지불하고 상호를 빌리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복건 및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세기 중후반부터는 직접 외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서의 여타 이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閩立, 위 논문, 285-287쪽.

30) 近日樞府查得一種華民私入外籍在內地各處遇事把持干涉或顯違國家禁令或不受警察範圍及至逮案究辦則每籍外人出頭要索交回保釋京津各處屢肇此項交涉案件迭經外部警廳力與爭持始稍俯就巡警範圍此等風氣斷不可開窮恐.(중략). ; 「外籍華民此後犯禁判法」, 『華僑聯合報』, 第2期, 宣統元年(1909).

31) 『大清歷朝實錄』, 卷582, 「德宗實錄」, 丙子日. 出使法國大臣劉式訓奏、臣民國籍. 關係重要. 亟宜妥定條例. 以培邦本而保主權. 下所司議. 摺包.; 정지호는 위 논문에서 <동방잡지>, <신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척화인 문제가 중국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32) 閩浙總督 松壽는 1907년 11월 22일 청조에 개척화인 문제가 내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에 청조 정부 또한 개척화인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최초로 국적법 조례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松壽奏嚴定人民移籍限定一片奉朱批該部議奏欽此』(光緒33年 10月17日,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檔案番號, 02-21-015-02-010).; 정지호, 위 논문, 275쪽, 재인용.

33) 法國公使 劉式訓은 주권의 문제와, 현행 조약에 저촉되는 문제, 화교 귀속문제 및 권리와 의무의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에 국적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劉式訓의 상소 이후 청조는 民政府, 外務部, 法部에 명을 내려 국적법 조례의 제정을 다시 지시하였다.

34) 陸徵祥은 修訂法律大臣에게 보낸 문서에서 수정법률관의 관원과 외교부의 관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1908) 10월 17일 6명의 관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각국의 국적법을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하라 지시 하였다. 閣立에 따르면 이때 해외로 파견된 인물은 章宗祥(동경제국대학 법과 입학 이후 명치대학 법과로 편입), 章宗祥의 형인 章宗元(캘리포니아 대학), 陳籙(파리 법률대학), 朱獻文(동경제국대학 법과), 馬德潤(독일 유학), 曹汝霖(법정(法政)대학), 熊垓(일본 중앙대학, 제국대학) 이상 6명으로 모두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해외 유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³⁵⁾ 이에 더해 沈家本은 같은 달 30일에는 駐日公使였던 胡惟德에게 일본의 국적법을 입수하여 청조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본격적으로 국적법 제정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난 宣統元年(1909) 2월 13일 「大清國籍條例」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같은 달 27일 농공상부 상서 溥廷은 완성된 초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3월 5일에 修訂法律大臣이 국적조례의 초안을 외교부로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3월 9일 憲政編查館의 최종 검토와 황제의 승인을 거쳐 마침내 중국 최초의 국적법인 「大清國籍條例」 및 세부사항을 다룬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이 3월 28일부로 반포와 동시에 시행되게 되었다.

II. 비교사적 방법으로 본 「大清國籍條例」

「大清國籍條例」을 분석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 법이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大清國籍條例」에서 최초로 채택한 屬人主義 원칙은 신해혁명 이후 제정된 국적법인 「中華民國國籍法」(1912)을 거쳐 현재 중국의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屬人主義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 원칙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다민족 국가인 현대 중국이 여전히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소수민족의 독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적 이탈의 명분으로도 사용 될 수 있는 屬人主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屬人主義 원칙의 이유 및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최초로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한 국적법인 「大清國籍條例」를 세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와 달리 국적법 제정당시 청조에는 민족 구분 및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屬人主義 원칙이 민족 간 갈등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고려 없이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은 청조가 동시기 新政을 진행하면서 ‘滿漢’의 차별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민족주의의 고양에 따른 종족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⁷⁾ 또한 청조가 新政期 만주족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점은 청조가 만주족 본위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민족갈등으로 인한 왕조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조가 민족 갈등의 소

각국의 국적법을 수집하고 모안을 작성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國籍法問題之二」, 『華僑聯合報』, 2期, 44-45쪽.

35) 閣立, 위 논문, 289쪽.

36) 「大清國籍條例」, 第一條.

37) 청조는 1902년에 만주족 남자와 한족 여자 사이의 통혼금령을 폐지하였으며, 1904년에는 장군과 都統 및 海關 내의 몇몇 관직을 한족에게도 개방하였다. 또 1906년에는 종족에 관계없이 한 사람을 중앙행정부 대신의 자리에 임명했으며, 1907년에는 만주족의 일부 특권(생계 수단 제공)을 철폐하고 법의 동등한 적용을 규정했다.

지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排滿主義者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혈통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적법을 제정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⁸⁾

청조가 屬人主義 원칙의 국적법을 채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大清國籍條例」가 일본의 국적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日本國籍法」과 마찬가지로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조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적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大清國籍條例」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日本國籍法」과 구성 및 내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때문에 청조가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한데에는 일본의 국적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大清國籍條例」는 법학을 전공하고 유학경험이 있는 인원들이 참여하여 외국 국적법의 수집과 검토, 중국의 실정법과의 호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정의 승인과 황제의 윤허를 받아 시행된 국적법이다. 특히 해외 각 국의 국적법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국적법 제정에 참여한 인원들은 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기본 원리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각국의 국적법은 地脈係와 血脈係가 있는데, 이는 즉 屬地主義와 屬人主義입니다. 이 양자는 반드시 서로 저촉되기 때문에 비록 각국은 어느 한 쪽에 치중하기는 해도 절충하는 방식인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논의해서 정한 국적조례 4장은 고유적, 入籍, 出籍, 復籍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절충주의를 채택하되 血脈係의 판법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³⁹⁾

위 인용문처럼 당시 국적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당시 각 국이 국적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屬人主義 또는 屬地主義 원칙을 세우되, 각각의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절충적인 요소들을 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만주족 정권인 청조도 屬人主義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屬地主義 요소를 채용해야만 법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완성된 「大清國籍條例」에서는 부계혈통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혈통으로 국적을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부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절충주의를 채택하였다.⁴⁰⁾ 이러한 점에서 국적법 제정 참여 인원들이 몇몇 연구의 지적처럼 일본의 국적법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屬人主義를 채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음으로 邱建章 등의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네덜란드 식민지 지역의 화교 귀속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大清國籍條例」의 제정이 진행된 것을 屬人主義 원칙 채택의 주된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던 光緒34年(1908) 해당지역의 華商들은 네덜란드의 통제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泗水에 모여 회의

38) 「大清國籍條例」에서 ‘淸國人’이 아닌 ‘中國人’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조는 본 국적법의 제정과정에서 국적의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종족 분쟁에 대해 세심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屬人主義 원칙의 경우에는 漢族중심의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혁명파 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부의 소수민족들에게도 독립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39) 原奏所稱各國國籍法有地派系血派系即是屬地屬人主義因兩義相持必生抵觸故雖各有注重之端而不能無折衷之制然各國即取折衷主義 ……(중략)…… 今原奏擬訂國籍條例四章以固有籍入籍出籍復籍爲綱而獨採折衷主義中注重血派系之判法.: 「憲政編查館 旨議覆大清國籍條例摺」, 『華商聯合報』, 4期, 2쪽.; 정지호, 「清末 國籍法制定과 '國民'의 境界」, 『중국사연구』, 52, 2008, 173-174쪽. 재인용.

40) 「大清國籍條例」의 第2條에서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大清國籍條例」, 第2條: 若父母均無可考或均無國籍而生於中國地方者亦屬中國國籍. 其生地並無可考而在中國地方發現之棄童同.

를 개최하였다. 泗水會議에서 「判法十條」를 결의한 화교들은 청 정부에 屬人主義 원칙의 국적법을 제정하고, 영사관을 설치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건의하였다.⁴¹⁾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청조는 국적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때문에 청조가 이들 해외 화교들의 귀속을 막기 위해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大清國籍條例」 제정 이후 청조는 屬人主義를 바탕으로 화교가 외국국적으로의 귀속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작 「大清國籍條例」에서는 내지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²⁾ 실제로 「大清國籍條例」의 시행 세칙인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을 살펴보면, 총 10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내국인의 국적포기와 관련된 내용이며 2개 조항은 국적포기자의 권리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내용이 내지의 문제에 할애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 국적법을 제정한 청조는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을 별도의 법규로 공포하여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은 당시 청조의 현안과 관련이 있는 법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조가 국적법 제정 이후 내지의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屬人主義 원칙과 내지의 문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의 조항 비중이 이와 같이 국적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서북변경지역민들의 국적이탈 문제와 改籍華人 문제가 청조의 주권 상실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청조는 서양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적법을 제정하였다.⁴³⁾ 때문에 청조는 서북지역민들의 중국 국적 이탈이나, 일부 改籍華人 문제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청조의 인식이 「大清國籍條例」와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청조가 국적법을 宣統元年(1909)에 공포하는 것에는 네덜란드의 화교귀속 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屬人主義를 채택하게 된 것에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내지의 문제로부터 청조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改籍華人 문제에 대한 국내의 악화된 여론 또한 청조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⁴⁴⁾ 이에 청조는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하여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을 다시 중국 국적으로 귀속 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大清國籍條例」의 국적포기 규정과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의 조항들은 이러한 청조의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하여 제정한 「大清國籍條例」는 총 5개의 章,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中國 國籍의 규정과 入籍 및 出籍, 그리고 復籍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41) 청조가 屬人主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적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泗水(수라바야)會議에서 의결된 「判法十條」가 주로 활용된다. 본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신속하게 국적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屬人主義를 채택”하는 것을 청조에 요구하는 것과 내외에 네덜란드 국적으로의 귀속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는 것이다.

42) 청조와 네덜란드 식민당국은 화교지역의 교섭을 둘러싸고 진행된 반세기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11년 「中和在和蘭領地植民地設領條約」을 체결하였다. 청조는 재외화교의 귀속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해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 해당지역 정부의 통제권을 인정하였고, 중국으로 귀국할 시에만 중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본 조약에 합의하였다.

43) Tsai Chutung 또한 위 국적법의 제정이 외국과의 교섭을 통해 청조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44) 당시 改籍華人들에 대한 중국의 여론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정지호, 「清末 改籍華人和 清朝 政府의 對應」, 『중국사연구』, 86, 2013, 253-289쪽.

1장 ‘固有籍’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중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8개 조항으로 구성된 2장 ‘入籍’에서는 중국 국적으로의 귀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3장 ‘出籍’부분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국적의 포기 및 상실에 대한 조건과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4장 ‘復籍’의 5개 조항은 애초에 중국인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시 중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의 준비사항과 제한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5장 ‘附則’은 본 조례가 비준되는 즉시 시행한다는 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여타 국가의 국적법과 다르게 청조의 국적법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적용하였다. 청조 국적법의 시행세칙인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 보다 국적법의 시행이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국적법 제정 이전 이미 外國籍에 가입한 사람 등 국적법 제정 前 국적이탈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의 10개 조항 중 8개 조항이 국적법 제정 이전 국적 이탈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룬 조항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⁴⁵⁾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大清國籍條例」는 네덜란드 정부의 식민지 지역 화교 귀속 정책에 대한 청조의 대응으로써 공포된 법이며, 제정과정에서 「日本國籍法」⁴⁶⁾을 많이 참고하였다. 때문에 「大清國籍條例」는 네덜란드의 국적법 및 일본의 국적법과 일정한 차이와 유사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大清國籍條例」을 조속하게 제정한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는 네덜란드의 국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듯 「大清國籍條例」의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주된 이유는 光緒33年(1907) 네덜란드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新律」이었다. 「新律」은 모두 3장,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령으로 屬地主義 원칙을 채택하였고, 네덜란드 식민지 국적을 부여하는 관련 기준을 담고 있는 국적법규이다.⁴⁷⁾ 하지만 청말 국적법 제정을 위해 해외 각국의 국적법을 수집·조사한 『中外國籍法』에는 이 「新律」 대신 네덜란드 본국의 국적법인 光緒元年(1875) 개정된 「和蘭國國籍法律」⁴⁸⁾이 기재되어 있다.⁴⁹⁾ 「和蘭國國籍法律」는 「新律」과 마찬가지로 屬地主義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咸豐4年(1854) 제정 이후 「新律」이 시행되기 전까지 네덜란드 본국과 식민지 지역 모두에 적용되었던 국적법이다.

이전까지의 선행연구에서 「新律」은 몇 차례 분석되기도 했거니와,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大清國籍條例」의 제정에 영향을 준 국적법과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光緒元年(1875) 개정된 「和蘭國國籍法律」을 「大清國籍條例」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⁵⁰⁾ 「和蘭國國籍法律」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말미에 시행일자와 屬地主

45)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의 1條부터 8條까지는 모두 「大清國籍條例」 이전에 이미 외국 국적에 入籍한 중국인의 국적회복 및 국적포기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 원문을 참조.

46) 「日本國憲法」은 『日本國憲法』과 별도로 제정된 성문법으로 1899년 공식적으로 시행된 근대적 의미에 국적법이다.

47) 네덜란드의 「新律」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연구를 참고. ;정지호, 「清末 國籍法制定과 '國民'의 境界」, 『중국사연구』, 52, 2008, 155-182쪽.; 許小青, 「清季國籍問題與民族國家身分認同」, 『天津社會科學』, 5, 2003, 122-127쪽.

48) 1854년 네덜란드의 국적법으로 제정된 「和蘭國國籍法律」는 1875년 대폭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본 법은 1875년의 수정본이다.

49) 1849년 정하여 1875년 다시 수정된 案에서는 “화란에 주소지가 있는 자는 화란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 규정하여 기존의 부계屬人主義 원칙을 屬地主義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50) 청조가 외국의 국적법을 수집하여 묶은 『中外國籍法』에 「新律」 대신 「和蘭國國籍法律」이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조가 국적법을 제정할 당시 네덜란드 속지의 국적법인 「新律」대신 본국의 「和蘭國國籍法律」에 더욱 비중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1875년 개정된 「和蘭國國籍法律」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義 원칙으로의 개정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청조의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1854년 案의 네덜란드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和蘭國國籍法律」의 1875년 개정안에서는 屬地主義 원칙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

「大清國籍條例」와 「和蘭國國籍法律」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귀화 및 국적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귀화에 관해 살펴보면 「和蘭國國籍法律」에 비해 「大清國籍條例」는 엄격한 조건과 예외 조항을 두어 귀화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가령 귀화의 조건으로 5년 이상 거주를 명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적법⁵¹⁾에 비해 청조의 국적법은 10년 이상을 규정⁵²⁾하고 있으며, 귀화자에 대한 관직임용의 제한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⁵³⁾ 또한 귀화자의 자녀의 국적선택을 강제시키는 부분에서도 위 두 국적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大清國籍條例」에서는 귀화자의 자녀 역시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가족 전체의 귀화를 강제하였다.⁵⁴⁾ 반면 네덜란드의 국적법은 개인이 귀화할 경우 자녀나 부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처럼 귀화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조의 국적법이 더욱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가족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적의 포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등장하는 귀화 부분에 비해 더욱 큰 차이가 드러난다. 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大清國籍條例」는 「和蘭國國籍法律」에 비해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다. 예로 들어, 네덜란드의 국적법은 자유의사에 따른 국적포기를 허용하고 있다.⁵⁵⁾ 반면 청조의 국적법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적의 포기를 금지하고 있다.⁵⁶⁾ 더욱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송, 병역, 납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관료출신자인 경우 청조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였다.⁵⁷⁾ 이러한 조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가의 기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復籍’)과 관련해서도 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和蘭國國籍法律」⁵⁸⁾과 달리 「大清國籍條例」에서는 해당 거주 지역 紳士 두 명의 보증을 필요로 하여 까다로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⁵⁹⁾ 또한 국적 회복자에 대해서도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관직임용의 제한을 두고 있다.⁶⁰⁾ 이처럼 네덜란드의 국적법이 비교적 자유로운 귀화와 국적포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조의 국적법은 귀화와 국적포기 및 국적회복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양국의 국적법은 근대적 국적법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형식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청국의 국적법은 귀화와 국적포기에 있어서 가족 중심적이며,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51) 「和蘭國國籍法律」, 第3條, 第2項.: 제3조 2항에서는 復籍을 하는 경우, 네덜란드 본국이나 식민지, 기타 해외 영토에 거주한지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귀화를 허용 하고 있다.

52) 「大清國籍條例」, 第3條, 第1項.: 제3조 1항에서는 귀화의 조건으로 중국에 연속하여 거주한지 10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53) 「大清國籍條例」, 第8條.

54) 「大清國籍條例」, 第6條.: 제6조에서는 귀화자의 처와 미성년인 자녀가 함께 귀화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55) 「和蘭國國籍法律」, 第7條 第3項.: 제7조 3항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국적포기를 허용하였다.

56) 「大清國籍條例」, 第13條.

57) 「大清國籍條例」, 第12條.

58) 「和蘭國國籍法律」, 第8條.

59) 「大清國籍條例」, 第22條.

60) 「大清國籍條例」, 第23條.: 국적을 회복한 자는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제8조에 해당하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차이는 인구의 출입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이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明治32年(1899) 공포된 「日本國籍法」은 「大清國籍條例」와 그 기본원칙과 형식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총 28개조로 구성된 「日本國籍法」은 「大清國籍條例」와 마찬가지로 屬人主義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附則을 시행 일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⁶¹⁾ 양 국적법의 유사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국적법은 모두 귀화의 기준으로서 ‘品行’을 들고 있다.⁶²⁾ 둘째, 귀화자의 관직임용 제한 또한 양국의 국적법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⁶³⁾ 마지막으로, 국적포기(‘出籍’)를 한 자의 권리 및 재산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⁶⁴⁾ 사실 이러한 규정은 여타 유럽 열강의 국적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의 국적법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등장하게 된 것은 유럽 열강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국적법을 제정하게 된 일본과 청조의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⁶⁵⁾ 국적법 제정 당시 양국의 상황은 해외 인구의 국내 유입 보다는 국내 인구의 유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또한 귀화자와 관련해서도 혼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경제 등 주요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이 귀화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운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상과 같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과 예외조항에 있어서는 양국의 국적법이 차이가 있다. 「大清國籍條例」는 「日本國籍法」에 비해 귀화와 국적 포기에 보다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大清國籍條例」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주해야만 귀화를 허용한다.⁶⁶⁾ 귀화의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의 경우 「日本國籍法」은 5년의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네덜란드의 국적법과 동일하다.⁶⁷⁾ 둘째,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청조는 원적지가 같은 紳士 2명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 거주지만 있으면 국적회복을 허용하고 있다.⁶⁹⁾ 셋째, 청조의 국적법과 달리 「日本國籍法」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국적포기를 허용하였다.⁷⁰⁾ 마지막으로, 양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화자의 관직 임용 제한 규정도 그 세부조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양국의 국적법 모두 정부의 허가를 거쳐 귀화자의 관직 임용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적 취득 후 5년 이후부터 內務大臣의 승인을 거쳐 관직임용 제한을 해제 할 수 있

61) 「日本國籍法」, 第28條.

62) 「日本國籍法」, 第7條, 第3項.; 「大清國籍條例」, 第3條, 第3項.; 위 두 항은 모두 품행이 단정한 자를 귀화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63) 「大清國籍條例」, 第8條.; 「日本國籍法」, 第16條.; 단, 「大清國籍條例」의 8조에서는 귀화자 본인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반해, 「日本國籍法」의 第16條에서는 귀화자와 그의 자녀까지 모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국적법이 보다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본 국적법의 가족중심적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戶籍 滿洲·朝鮮·臺灣』, 明石書店, 2010, 430쪽.

64) 「日本國籍法」, 附則. 關於喪失國籍者之權利之件: 喪失日本國籍者之家族, 其非日本人不得享有之權利, 一年以內, 不讓渡於日本人, 其權利則歸屬於國庫.

65) 단, 일본의 국적법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거나 현재 관직에 임용되어 있을 경우 귀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서 청조의 국적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에서 이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日本國籍法」, 第24條.

66) 「大清國籍條例」, 第3條, 第1項.

67) 「日本國籍法」, 第7條, 第1項.

68) 「大清國籍條例」, 第22條.

69) 「日本國籍法」, 第25條.

70) 「日本國籍法」, 第20條.; 청의 국적법과 달리 일본의 국적법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일본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다.⁷¹⁾ 반면 청조의 경우 귀화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民政府의 심의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⁷²⁾ 또한 청조의 국적법에서는 국적회복을 한 자 또한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관직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⁷³⁾ 이처럼 「大清國籍條例」는 「日本國籍法」보다도 더욱 엄격한 귀화와 국적포기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국 국적법의 차이는 국적법을 제정한 시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국의 국적법은 「日本國籍法」이 시행된 10년 후인 宣統元年(1909)에 시행되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청조는 일본 국적법의 취약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하고 폐쇄적인 규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국적을 포기할 경우 신고의 의무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하나의 예이다. 「日本國籍法」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大清國籍條例」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의 조건을 만족시더라도 관청에 직접 외국 국적의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제반 사항의 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국적의 포기를 승인하고 있다.⁷⁴⁾ 구성에서도 「大清國籍條例」는 固有籍, 入籍, 出籍, 復籍, 附則 총 5개의 장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별도의 구분 없이 조항들이 순서대로 나열된 「日本國籍法」에 비해 「大清國籍條例」는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大清國籍條例」는 「日本國籍法」의 내용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추가적인 보강작업이 이루어진 국적법이다.

Ⅲ. 「大清國籍條例」와 근대 중국의 구상

「大清國籍條例」 또한 新政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다. 때문에 당시 청조의 다른 개혁 구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大清國籍條例」의 국적포기 조항 중에는 징병제 및 의회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병역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제12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2조는 국적을 포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중국인으로 왼쪽의 각 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出籍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송사건이 끝나지 않은 형벌을 받은 백성 (2) 병역의 의무 (3) 미납된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자 (4) 관원 내지는 관원 출신⁷⁵⁾

이 조항은 「日本國籍法」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국적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조 국적법만의 유일한 조항이다. 제12조 역시 국적포기와 관련된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청조 국적법의 엄격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포기의 조건 중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바로 2항의 병역의 의무이다. 제12조의 2항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국적포기를 제한하고 있다. 제12조의 2항은 3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의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71) 「日本國籍法」, 第17條.

72) 「大清國籍條例」, 第8條.

73) 「大清國籍條例」, 第23條.

74) 「大清國籍條例」, 第17條, 第18條.

75) 「大清國籍條例」, 第12條.

그러나 宣統元年(1909) 「大清國籍條例」를 시행하던 시점에 청조에서는 아직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12조 2항의 ‘병역의 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新政期 청조의 병제 개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조는 光緒27年(1901) 각 省의 巡撫들에게 병제를 재편할 것을 명령하고 武備學堂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기존 팔기군과 녹영군으로 구성된 병제를 근대식 병제로 개혁하고자 했다. 이에 光緒29年(1903) 新軍의 모집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구인 練兵處를 북경에 설치하고 光緒30年(1904)에는 練兵處 휘하의 新軍을 36鎮으로 재편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⁷⁶⁾ 또한 같은 해 청조는 병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 병역의 의무는 常備軍으로 3년을 복무한 이후 續備軍과 後備軍으로 다시 4년을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병역의 의무’였다.⁷⁷⁾ 즉, 「大清國籍條例」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병역의 의무’는 국민개병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개념의 ‘징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光緒30年(1904)년 발표된 병역 의무제도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청조는 앞서 징병제를 실시 중이던 일본 등지에 신식 군제 교육을 목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청조는 기존 군제를 징병제로 전환하려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⁷⁸⁾ 청조는 光緒32年(1906)에 기존의 팔기군 및 녹영군을 통솔하는 兵部와 練兵處를 통합하여 陸軍部를 신설하고 그 통제권을 만주인들이 장악하려 하였다.⁷⁹⁾ 하지만 이러한 청조의 중앙집권적 병제 개혁 방침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한인 관료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징병제 시행 또한 난항을 겪고 있었다. 특히 「大清國籍條例」가 공포되던 宣統元年(1909) 시점에도 여전히 재원의 부족과 기존 팔기군의 처리라는 문제 때문에 국민개병을 핵심으로 하는 청조의 징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⁸⁰⁾

이처럼 청조에서 징병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실시되지 못하였지만, 징병제를 시행하려는 청조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다음은 「欽定憲法大綱」 중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7조이다.

제7조. 신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⁸¹⁾

이 「欽定憲法大綱」는 光緒34年(1908) 공포한 법령으로, 군주의 대권에 관한 10개 조항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강이다. 이 大綱은 憲政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청조의 구상이 담겨 있는 문서로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에서는 청조의

76) 재원의 문제로 練兵處가 신설된 당시에는 省에서 모집으로 新軍의 병력을 충당하였다. 이때 新軍의 지원 자격은 전과자나 아편 중독자를 제외한 20~25세의 건장한 남자로, 가정이 있는 남성으로서 해당 성의 거주민에게 부여되었다. : 데니스 트위체트, 존 K. 페어뱅크, 김한식 외 옮김, 『캠브리지 중국사』 11(下), 청 제국 말 1800-1911(2부) : 근대화를 향한 모색, 새물결, 2007, 579-1152쪽.

77) 청조는 新軍을 36鎮으로 재편하여 대략 45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자 계획했다.

78) Yoshihiro Hatano, "The new armies",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Mary C. Wright ed., 1900-1913, pp.365-382.

79) 1908년 신설된 禁衛軍 또한 만주인들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조의 중앙집권적 병제 개혁 방침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한인 관료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 Stephen R. Mackinnon, "The Peitang army, Yuan Shih-K'ai and the origins of modern Chinese warlordism", *JAS*, 32-2, 1973, pp.405~423.

80) 청조는 1907년 녹영병을 巡訪營으로 전환하여 헌병경찰로 편제하고 팔기군을 새로운 정규군인 新軍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역시 기존 팔기군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다.

81) 「欽定憲法大綱」, 光緒34年(1908), 附臣民權利義務, 第7條: 臣民按照法律所定, 有納稅、當兵之義務.

신민들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조는 新政期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서 ‘臣民’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大清國籍條例」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병역의 의무’는 청조의 ‘臣民’ 즉,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징병의 의무인 것이다.

결국, 「大清國籍條例」 제12조 2항의 ‘병역의 의무’는 국민개병을 바탕으로 한 징병제를 의미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宣統元年(1909) 국적법을 공포하던 시점에는 여전히 청조의 징병제는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때문에 제 12조는 법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정지호의 연구⁸²⁾를 제외하고는 아직 학계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법학을 전공하고, 유학경험이 있는 엘리트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大清國籍條例」에서 이러한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大清國籍條例」와 「日本國籍法」의 유사성이다. 주지하듯 양국 국적법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日本國籍法」의 병역 관련 조항을 살펴본다면 반대로 「大清國籍條例」에서 이러한 병역관련 조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日本國籍法」에는 「大清國籍條例」의 제12조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日本國籍法」에서도 병역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찾을 수 있다. 「日本國籍法」의 제 24조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귀화한 자가 국적법 시행으로 인해 일본 국적을 상실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예외 사항으로서 병역의 수행을 언급하고 있다.

제24조. 만 17세 이상인 남자는 비록 앞 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미 육해군 현역으로 복무하였거나, 육해군 현역의 의무를 기피함이 없으면 일본국적을 상실치 않는다. 현재 문무관직에 재직 중인 자는 비록 6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그 관직을 잃지 않는 한은 일본국적을 상실치 않는다.⁸³⁾

「日本國籍法」의 제24조는 「日本國籍法」에 등장하는 유일한 병역의무 관련 규정으로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일본의 징병관련 법규와도 호응하는 조항이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明治6年(1873)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실시한 징병제에 의해 明治32年(1899) 국적법을 공포하던 시점에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일본정부에게는 국민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국적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었으며, 나아가 본래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일본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일본인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위 조항을 통해 당시 일본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들도 일본인으로서 적극 포섭해 나갈 수 있었다.⁸⁴⁾ 이처럼 「日本國籍法」에는 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메이지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大清國籍條例」를 시행하던 시점에 청조에는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지

82) 정지호는 징병제와 관련된 법리적 모순 이외에도 중국 국적의 부여와 관련된 모순(제2조)을 지적하였다.

83) 「日本國籍法」第24條.: 제24조에서 언급된 제5조와 제6조는 귀화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부록참조). 일본 정부는 제24조를 통해 일본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84) 「日本國籍法」에서 징병제와 관련한 위 조항이 장기적인 병력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戶籍 滿洲·朝鮮·臺灣』, 明石書店, 2010, 430쪽.

않았다. 때문에 「日本國籍法」의 24조와 같은 규정은 청조에게 그다지 필요한 조항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日本國籍法」의 제24조와 유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병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大清國籍條例」의 제12조와 「日本國籍法」의 제24조는 그 성격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국적법은 병역을 수행한 외국인의 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조의 국적법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국적 포기를 위한 제반 조건으로 설정되어 국민의 범위 설정 측면에서 보다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大清國籍條例」의 제12조는 일본의 국적법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당시 청조의 상황을 고려해 「大清國籍條例」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처럼 제12조가 「大清國籍條例」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라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12조 중 1, 3, 4항은 「大清國籍條例」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12조의 1항의 경우 중국에서 죄를 짓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자의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죄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의 국적 포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다음 3항은 미납된 세금이 있는 자에 대해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위 두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改籍華人的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4항의 경우 관원 내지는 관원 출신인 자의 국적포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중국의 기밀이 이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조항이다. 이처럼 제12조가 방어적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大清國籍條例」의 여타 조항과도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1장에서 설명한 「大清國籍條例」의 제정 목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제12조 각 항은 당시 청조의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2조의 2항은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청조가 징병제의 시행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大清國籍條例」 제12조의 2항은 단순한 오류라기보다는 징병제 시행을 염두해두고 고안된 일종의 ‘예비조항’인 것이다. 이와 같이 「大清國籍條例」는 당시 청조의 새로운 중국 건설 구상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이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법리적 모순은 ‘入籍’ 규정 중 관직진출 제한 규정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비조항’의 성격을 띄고 있는 조항을 다음 「大清國籍條例」의 제8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8조: 入籍한 자는 좌측에 열거된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1) 軍機處 내무부 각 관직과 경외의 사품이상 문관 (2) 각 항의 무관과 군인 (3) 상하의원과 각 省의 諮議局의 의원. 전 항에서 제약을 정한바, 入籍한 사람으로 스스로 入籍한 날짜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사람이거나 그 외 入籍자로 스스로 入籍한지 20년 이후에 민정부로에서 상주하여 그 제약을 면제 받은 자는 특별 허가한다.⁸⁵⁾

제8조는 귀화자의 관직진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귀화자에 대해서 중앙관직 및 외관직, 陸軍部の 관료, 중앙 및 지방의회의 의원직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제8조 역시 현실과 괴리를 가지고 있는 모순된 조항이다. 제8조의 3항은 상하의원직과 각 省의 諮議局 의원직 즉, 중앙의회인 資政院의 의원직과 각 省에 설치될 지방의회인 諮議局의 의원직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大清國籍條例」 제정 당시 청조에는 資政院과 諮議局에 구상 계획만 있을 뿐 아직 의회소집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현실과 괴리를 가지고 있는 조

85) 「大清國籍條例」, 第8條.

향으로 볼 수 있다.

「大清國籍條例」 제12조 중 병역관련 국적 포기 조항이 청조의 국적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이었다는 것과 달리 「大清國籍條例」 제8조에 경우에는 「日本國籍法」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다음 「日本國籍法」의 제16조와 제17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16조. 귀화인과 귀화인의 자녀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와 일본인의 양자 내지는 양부로 귀화한 자는 열거된 권리(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를 가질 수 없다. (1) 국무대신 (2) 추밀원의장, 부의장 혹은 고문관 (3) 궁내척임관 (4) 특명전권공사 (5) 육해군장관 (6) 대심원장, 회계검사원장, 행정재판소장관 (7) 제국회의의원. **제17조.** 앞 조항의 제약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귀화가 허가된 자는 국적을 취득한지 5년 이후부터, 기타 10년 이후부터 내무대신의 승인 후 그러한 제약을 풀 수 있다.⁸⁶⁾

「日本國籍法」의 제16조는 「大清國籍條例」의 제8조와 마찬가지로 귀화자의 관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무대신, 추밀원의장, 부의장 혹은 고문관, 궁내척임관, 특명전권공사, 육해군장관, 대심원장, 회계검사원장, 행정재판소장관직 및 제국회의의 의원직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17조는 제16조의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明治22年(1889)에 공포된 『日本帝國憲法』에 따르면, 위 관직들은 국가통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입법, 사법, 행정 및 외교에 관한 주요 관직이다.⁸⁷⁾ 일본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귀화한 외부인에게 국가통치의 주도권을 뺏기거나, 국가의 주요 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⁸⁸⁾ 따라서 「大清國籍條例」 제8조의 규정 또한 「日本國籍法」 제16조와 마찬가지로 청조의 유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大清國籍條例」 제8조와 「日本國籍法」의 제16조에는 세부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위 두 조항에는 제한하고 있는 관직에 차이가 있다. 「日本國籍法」의 제16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과 관련된 주요 관직을 귀화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관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大清國籍條例」 제8조에서는 1항에서 4품 이상의 문관, 2항에서 무관과 군인직의 임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그 제한 범위가 「日本國籍法」에 비해 넓다. 이러한 차이는 귀화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大清國籍條例」의 기본적인 흐름과도 호응하는 것으로, 제16조 또한 「日本國籍法」에 비해 더 엄격하고 방어적인 「大清國籍條例」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大清國籍條例」 제16조에서 제한한 관직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日本國籍法」 제8조의 제한 관직들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軍機處는 옹정제에 의해 본래 군사기밀을 다루는 임시조직으로서 창설되었지만 옹정제 이후로도 내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光緒27年(1901) 軍機處 산하기구였던 총리아문을 개편하여 출범한 외무부 또한 명목상으로 軍機處 내부 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大清國籍條例」 제8조의 1항은 귀화자의 입법, 사법, 행정, 외교의 관직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日本國籍法」의 제16조의 1, 2, 3, 4, 6항과 대응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8조의 2항은 귀화자의 무관과 군인직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 역시 「日本國籍法」 제16조의 5항과 대응

86) 「日本國籍法」, 第16條, 第17條.

87) 1889년 공포된 『日本帝國憲法』에 따르면 당시의 통치기구인 천황을 중심으로 내각과 고문을 담당하는 추밀원,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제국회의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육해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8) 「日本國籍法」의 原案에는 귀화자에 대해 선거권 또한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공포 과정에서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처럼 귀화자에 대해 정치참여에 차별을 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귀화자에게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遠藤正敬, 위의 책, 108쪽.

하고 있는 조항이다.⁸⁹⁾ 이처럼 「大清國籍條例」 제8조와 「日本國籍法」 제16조는 내용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유사하다. 즉, 일본의 국적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을 청조의 관직과 호응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大清國籍條例」 제8조의 3항 역시 여타 항들과 마찬가지로 「日本國籍法」의 제16조 7항과 입법관련 관직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범위와 세부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日本國籍法」 제16조 7항에서는 제국의회 의원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제국의회는 메이지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중의회의이다. 하지만 본 조항과 달리 「大清國籍條例」 제8조의 3항에서는 중의회의인 資政院과 지방의회인 諮議局 의원직 모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조의 의회 체계와 일본의 의회체계가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청조는 光緒34年(1908) 「欽定憲法大綱」을 공포하면서 1916년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1917년까지는 의회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공포한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와 의회 소집에 관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欽定憲法大綱」의 발표 직후 입헌파들은 의회소집 계획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宣統元年(1909)에 선거를 거쳐 諮議局이, 宣統2年(1910)에는 資政院이 설립되었다. 결국 「大清國籍條例」을 공포·시행하던 시점에 청조에는 아직 중앙과 지방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大清國籍條例」 제8조의 3항 또한 일본의 국적법을 참고하되 청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조항으로 제12조 중 징병제 관련 조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예비조항’으로 볼 수 있다.

諮議局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예비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大清國籍條例」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청조는 諮議局을 구성하기 위해 光緒34年(1908)에 「省鎮鄉地方自治章程」, 宣統2年(1910)에는 「府廳州縣地方自治章程」을 공포하여 투표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⁹⁰⁾ 이에 따르면, 宣統元年(1909) 제1차 諮議局 선거의 투표권은 25세 이상 남성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세금 혹은 기부금이 2원이상인 자에게 부여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본 투표권을 부여하는 주요 조건으로 ‘중국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적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내지는 시민을 규정하는 작업으로써, 청조는 의회제 및 징병제 실시를 염두해 두고 「大清國籍條例」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도 「大清國籍條例」을 통해 규정된 국적을 투표권을 부여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청조의 국적법 제정은 투표권 및 정치참여계층을 규정하는 작업과도 병행되었으며, 청조의 의회제 구상과 「大清國籍條例」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大清國籍條例」의 제8조와 제12조 두 조항은 본 국적법이 청조의 근대국민국가 건설 구상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임을 보여주고 있다. 「大清國籍條例」는 근대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新政과 맥락을 함께 하는 법으로, 법 공포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징병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 의무를 전제하고, 국민개병의 모색을 하고 있던 당시의 개혁 진행상황과 호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설치될 의회가 중국인 본위의 의회가 되도록

89) 단, 「日本國籍法」의 5항에서 “육해군 장관”이라는 명확한 직위를 규정한 것과 달리, 「大清國籍條例」의 제8조 5항에서는 “각 항의 무관과 군인”으로 불분명하게 임용 제한 직위를 규정하였다. 이는 1909년 당시 청조의 군사개혁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군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90) 『大清宣統新法令』, 14권, pp.1~15.; 『大清光緒新法令』, 2권, pp.44~62.; 데니스 트위체트, 존 K. 페어뱅크, 김한식 외 옮김, 『캠브리지 중국사』 11(下), 청 제국 말 1800-1911(2부) : 근대화를 향한 모색』, 재인용.

록 비교적 강력한 제한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제8조와 제12조와 관련하여 「大清國籍條例」에 보이는 이러한 폐쇄성은 국가의 과분을 막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조 본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청조 입법자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고에서는 기존에 네덜란드 속지 지역 화교의 外國籍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온 「大清國籍條例」의 제정을 개항 이후 국적과 관련하여 청조를 둘러싼 내외의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청조의 국민국가 건설 구상의 일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서양에서 국적의 탄생은 국민국가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특히 서양에서 국적법은 개개인의 국적을 규정하는 법인 동시에, 국민이 되는 자격과 국민의 자격을 상실 또는 포기하는데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법으로 인식되었다. 청조의 국적법 제정 역시 서양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 하나였다.

개항 이후, 연이은 패전에 따라 종래의 天下觀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으며, 청조 또한 청조가 여러 국가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급증하는 중국에서의 인구유출은 청조의 주권 및 영토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南洋群島 지역 화교들의 外國籍 귀속 문제 및 改籍華人 문제, 그리고 서북변경지역 소수민족의 국적이탈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宣統元年(1909) 「大清國籍條例」를 제정하기까지 청조에서는 인구유출을 관리·통제할 어떠한 통합적인 지침이나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 귀속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조는 光緒34年(1908)부터 憲政編查館을 중심으로 국적법의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이듬해인 宣統元年(1909) 중국 최초의 국적법인 「大清國籍條例」을 공포하게 되었다.

「大清國籍條例」을 제정하기 위해 청조는 법학을 전공한 유학파 관료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국적법을 수집·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으며 국적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대적 국적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 결과 「大清國籍條例」는 屬人主義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屬人主義원칙 채택은 해외 화교의 외국 국적 귀속 문제와 改籍華人문제, 서북지방의 소수민족 俄籍귀속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청조의 주권수호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大清國籍條例」의 제정과정에서 채택된 屬人主義원칙 「中華民國國籍法」를 거쳐 현대 중국의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에도 유지되고 있다. 청조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屬人主義원칙의 채택이외에도 별도의 시행세칙인 「大清國籍條例施行細則」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이탈에 대해 통일적 규정을 마련한 청조는 이미 외국 국적에 귀속된 화교들과 改籍華人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 국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근대적 국적법인 「大清國籍條例」 역시 新政期 民法·刑法 등의 제정과 마찬가지로 일본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大清國籍條例」는 「日本國籍法」과 귀화자에 대한 관직 임용 제한 규정, 국적 포기자의 처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국 국적법의 이러한 유사성은 비교적 늦은 시기 국적법을 제정하게 된 청조의 상황이 『日本帝國憲法』

을 제정 하던 시점에 일본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日本國籍法」에 비해 「大清國籍條例」에서는 귀화와 국적포기 및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조건이 엄격하며 제한 또한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大清國籍條例」의 귀화에 대한 폐쇄성과 국적포기에 대한 엄격함에는 당시 민족주의가 고양되어가던 국내의 여론과 청조의 강력한 주권 수호 의지가 반영 되어 있었다.

한편, 「大清國籍條例」는 동시기 청조가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다른 개혁들과도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적법이다. 「大清國籍條例」에서는 징병제와 관련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귀화자에 대해서는 의회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大清國籍條例」를 공포하던 시점에는 아직 징병제나 의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았지만, 「大清國籍條例」에는 징병제 및 의회제와 관련한 일종의 ‘예비조항’을 두어 앞으로 실시될 징병제와 의회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大清國籍條例」는 다른 청조의 국민국가 건설 작업과도 호응하는 근대적 국적법으로서 국적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구상이 담겨있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국적법과 징병제 및 의회 개설 준비 등의 연결성은 청조가 구상한 근대 국가 건설 중 일부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新政期 청조가 구상한 근대 국민국가의 전체적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청조가 국민을 어떻게 설정하였으며, 어떠한 역할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개념의 등장에 따른 기존 인신적지배의 변화 양상 내지는 國籍과 戶籍의 구분과 상호 관계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大清國籍條例」의 제정 이후 청조는 이 국적법을 근거로 국적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과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宣統3年(1911)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됨에 따라 특정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大清國籍條例」의 屬人主義 원칙이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은 民國元年(1912) 공포된 「中華民國國籍法」으로 계승되어 1930년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大清國籍條例」는 중국 최초의 국적법이자, 중국 최초로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후 중국의 국적법들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화민국헌법의 설계자 吳經熊의 법사상

- 삼민주의에서 자연법으로 -

김 세 호 (한남대)

머리말

1. 생애와 저술
2. 법과 정치-삼민주의의 입법자
3. 會 통과 超越-자연법에 대한 관심

맺음말

머리말

본고는 중화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중국의 법률체계 확립에 중대한 공헌을 한 오경웅의 법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¹⁾. 주지하듯이 오경웅은 남경국민정부 시기 「중화민국헌법초안」(「55헌초」) 제정과정에서 「중화민국헌법초안초고」(이른바 「吳經熊草案」)을 작성하여 헌정 논의의 물꼬를 텃고, 이후 1946년 중화민국헌법 제정에서도 헌법 기초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헌법 제정 뿐 아니라 그는 민법 편찬 등 중국 법제의 근대화와 법치 건설에 중대한 기여를 했고, 일찍이 유럽에 유학하여 홈스, 슈타머 등 당대 우수한 법학자로부터 최신의 법학 이론을 접하고 그들과 심층적 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중국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사상에 있어서 동서와 고금의 회통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의 법철학 내지 법리학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 외에도 가톨릭에 귀의한 후 자서전 『동서의 피안』을 비롯하여 『내심낙원』, 『황금의 선학』 등 종교 철학 방면의 저서를 남긴 사상가이자 구약 『시편』과 『신약전서』를 번역한 종교인, 임어당과 함께 『천하』라는 영문 잡지를 발행하여 중국문화를 서양에 알린 문화인²⁾ 등의 다채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그 중 법률가로서의 오경웅의 삶의 자취를 살펴보고 그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의 법사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헌법을 위시한 근대 서양의 법과 법률제도가 중국적 현실에 수용되고 정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국의 전통적 법사상과의 부조화 등이 수반되는데, 바로 법률 문화의 충돌과 변용, 절충과 간섭 등 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사다난한 속사정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법률가로서의 오경웅의 생애는 3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국민당정부의 입법위원으로 「헌법초안초고」를 기초하고 「55헌초」를 탄생시킨 후, 그를 바탕으로 (비록 반쪽자리 헌법이었지만) 공화정 수립 후 최초의 「중화민국헌법」 제정의 산파

1) 오경웅에 대한 자세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대부분 영문으로 쓰여진 그의 법률 관련 논문이 최근 자료집의 형태로 번역되어 묶여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만 지적해 둔다. (吳經熊, 『法律哲學研究』, 青華大學出版社, 2005; 孫偉, 李冬松 編譯, 『吳經熊法學文選』, 中國法政大學出版社, 2012; 孫偉編, 『吳經熊裁判集與霍姆斯通信集』, 中國法制出版社, 2010 등)

2) 趙穎, 「吳經熊『超越東西方』的多元譯介實踐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8-3, 2015.

역을 수행한, 이른바 ‘삼민주주의의 입법자’로서의 면모이다. 둘째는 학문적으로 서양 근대 법학의 성과를 수용하고 그 세계적 추세를 소개할 뿐 아니라 유가를 비롯한 제자서의 전통적 법사상을 서양에 소개하고 양자의 비교와 종합을 통해 법철학 또는 법리학 분야의 문화적 지평을 확장한 공헌이다. 셋째 가톨릭의 영향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종교적 사상적 온축을 통해, 보편적 객관적 규범원리인 자연법 사상에 대해 천착한 철인의 면모이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오경웅의 저술을 토대로 법률가로서의 그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것도 요령부득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먼저 그의 생애와 저술활동을 일별하고 그가 남긴 중요한 글들을 독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법률 분야에서 동서와 고금을 회통하고자 한 그의 학문적, 철학적 여정이 20세기 전반 중국이 마주쳐야 했던 지적 과제들과 어떻게 연루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로부터 이끌어지는 오경웅의 법사상의 의미와 성격을 반추하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삼민주주의에서 자연법으로’라는 낯선 대칭을 부제로 내세웠다. 삼민주의라는 특수한 정치 이념을 헌법에 구현하고자 한 것과 인류 보편의 법질서를 의미하는 고도의 추상법으로서의 자연법에 대한 관심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련이 있는가, 단순한 전자에서 후자로의 관심의 변화인가, 양자가 애당초 그의 관심의 사정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의 법철학의 발전과 사상적 관심의 자연스런 귀결인가, 만약 내재적 관련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생애와 저술³⁾

오경웅은 1899년 절강성 영파의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1917년 천진 북양대학 법학과에 진학하면서 법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지만, 그후 다시 상해의 감리교계의 東吳學堂 법과로 옮겨 학업을 계속했고, 1920년 동대학을 졸업하고 오경웅은 미국 미시간대학 로스쿨로 유학길에 오른다. 미시간대학 유학 중에 그는 「중국 고대법전 및 법과 법사상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을 미국 법학 전문지(*Michigan Law Review*)에 게재할 정도로 상당한 학문적 성취를 거두었는데, 이때 그 논문을 당시 미국의 최대 법률가 대법관 홈스(Oliver W. Holmes)에게 보낸 것을 계기로 그와 평생의 망년지교를 맺게 된다. 오경웅에게 있어 홈스의 학문적 영향은 대단히 컸으니, 1935년 홈스가 서거하자 그의 법률사상을 정리하여 「대법관 홈스의 마음」이란 글을 발표하고 그와 나눈 서간을 자신이 관여하는 잡지 『天下』에 발표할 정도였다. 그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서전 『동서의 피안』에서도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1921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오경웅은 또다시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며 「국제법의 기본개념의 변천」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옮겨 유명한 법철학자 슈탐러(Rudolf von Stammler) 교수의 문하에서 법철학을 연구한다. 슈탐러는 객관적 정의 법률 개념의 구축과 정의 법률 원칙의 연역을 제창하며 인간 행위의 보편적 개념을 추구하는, 이른바 신칸트학파의 중심인물이었는데, 이는 실용주의적 법사상의 대표자 홈스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학자였다. 오경웅은 슈탐러의 법개념과 홈스의 법사상을 비교하고 양자의 종합을 타진하는 논문 「홈스 대법관의 법철학」을 발표하여 두 대가 본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기도 한다. 미국에 돌아와 하바드 로스쿨의 파운드(Roscoe Pound) 교수 밑에서 비교법을 연구하

3) 오경웅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曾建元, 「跨越東與西-吳經熊的人與法律思想素描」에 의거해 정리했다.

는데, 그 성과를 논문 「로스코 파운드의 법철학」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파운드는 후술하지만 ‘사회본위의 법률’을 강조하는 이른바 사회법학의 이론가였다.

구미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1924년 귀국하여 오경웅은 모교인 동오대학 법학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면서, 홈스의 저작 및 미국 법학계의 최신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을 정력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오경웅은 강단 법학의 울타리를 넘어 1927년 강소성정부에 의해 상해 공공조계 임시법원의 民庭推事(후에 수석추사, 대리원장, 상소원 대리원장으로 승진)로 임명되어 법률실무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는 공공조계 임시법원이 중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는데, 조계 사법관할권 회수정책의 일환이란 의미도 있었다. 오경웅은 이 기회를 매우 기뻐하며 ‘중국의 법을 홈스화’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1929년에 남경정부가 수립된 후 오경웅은 사법부 참사, 編訂法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명되어 민법 기초작업에 참여하였다. 관계에 들어오기 전 관계와 인연을 맺게 해준 논문 「법률의 三度論」을 발표하는데 홈스의 실용주의 법학의 영향을 받은 이 글은 호한민을 위시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29년 오경웅은 상해특별고등법원 원장으로 승진하지만 곧 사임하고 미국 대학의 초빙을 받아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법학원에서 특약법학강사로서 중국 전통과 현대법률제도를 강의하며 「유가와 법가」 등 글을 발표한다. 중국의 전통 법률사상 및 제도에 대한 천착은 오경웅의 자발적 관심의 발로이기도 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외국대학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그 과정에서 비교법학자 위그모어(Whigmore)와 교류하고 위그모는 『일리노이법률평론』에 오의 저서(『법률논총』 *Juridical Essays and Studies*, 1928)에 대한 서평을 쓰기도 했다. 1930년 오경웅은 (개인사정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하바드대학 로스쿨로부터 비교법학 강의의 요청을 받기도 한다.

오경웅과 국민당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만주사변 및 상해사변으로 형성된 ‘국난’의 분위기 속에서 소집된 국난회의에 회원으로 초청받으면서이다. 32년 4월 중국국민당에 가입한 후 오경웅은 삼민주의와 손문 사상의 중요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작 그가 삼민주의를 받아들이고 국민당에 입당하는 개인적 경위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고 있지 않다.

1933년 오경웅은 입법원장 孫科의 요청으로 입법원 입법위원에 취임하고 법제, 외교 양위원회 의원으로 본격적인 국민당정부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리고 헌법학자 張知本과 공동으로 헌법기초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아(위원장 손과) 憲法主稿위원으로 헌법기초 업무에 참여한다. 특히 오경웅은 「헌법초안초고」의 기초를 명받아 33년 6월 「중화민국헌법초안초고시이고」를 완성, 이를 오경웅 개인 명의로 언론에 발표하여 각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한다. 삼민주의 색채로 충만한 이 초고는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아무튼 이후 헌법기초위원회가 개조되고 오경웅 판본을 기초로 주교인심사회의의 대폭 개정을 거쳐 「중화민국헌법초안초고」를 완성하고, 법원 심사와 입법원의 3독, 수정안의 국민당5전대회를 거쳐 세칭 1936년 「55헌초」가 확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헌초 제정 과정에서 오경웅은 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오경웅과 국민당정부 및 장개석과의 정치적 관계는 (그가 「中華民國訓政時期約法釋義」를 집필하고 『中華民國六法理由判解匯編』 등 주로 법전편찬의 감수, 교감 등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대체로 순조로왔던 것 같다. 「55헌초」의 원시 기초인이자 국민당의 제헌국민대회 대표로서 오경웅은 자신이 참여한 헌법기초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식에서 1937년 「과거 입헌운동의 회고와 이번 제헌의 의의」란 장문의 논문을 쓰고 이를 기초로 『中國制憲史』(黃公覺 공저)를 저술하였다.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행정원장 장개석은 국민당중앙정치회의 명의로 강서 廬山에서 당파 및 명류담화회를 열고 항전의 결심을 선포했는데, 이때 오경웅도 참

가를 요청받았다.

헌법기초에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오경웅의 저술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는데, 「중국역사상의 법치와 인치의 투쟁」, 「중국 舊법제의 철학적 기초」, 「唐 이전 법률사상의 발전」 등 전통 법률사상에 대한 연구, 「新民法과 민족주의」, 「三民主義와 법률」 등 정치 이념과 법률의 관계를 논한 시사성 짙은 글, 서양법리학을 소개한 「법률의 다원론」, 「60년래 서양법학의 여러모습」, 「슈타이너의 법률철학과 그 비평자」 등이 있다. 또한 그의 초기 실용주의 법사상을 대표하는 논문집 「법의 예술」(*The Art of Law and Other Essays*, 1936)을 펴냈다. (앞서 파운드는 오경웅의 이 저서에 대한 서평을 *Harvard Law Review*에 실을 정도로 둘의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고, 1946년 중화민국의 법률고문으로 초빙된 것도 이러한 인연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溫源寧, 林語堂, 全增嘏 등과 함께, 손과의 지원을 받아 영문잡지 『天下』(월간)를 창간하고 중국문화를 서양에 소개하는데 노력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한 시기는 오경웅 개인의 생애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인 천주교 입교(「歸正」)의 해이기도 하다. 오경웅의 천주교 입교는 그의 후기 법률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자연법 사상에 대한 천착은 본디 법철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종교적 사유와 만나 깊어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경웅은 헌법초안의 기초자, 자연법 사상에 대한 권위있는 법률가일 뿐 아니라 경건한 천주교 신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자각하며 일생을 정진하였다. 일본군 점령을 피하여 홍콩 등지를 전전하다가 중경에 안착, 오경웅은 장개석 및 송경령의 재정적 후원과 역사학자이자 신부인 方豪의 협조를 받아 『시편』의 운역 및 『신약전서』의 번역에 착수한 것도 그의 일생에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신약 번역 초고를 완성한 후 자료 부족과 자문의 필요를 느껴 손과를 통해 장개석에게 교황청 대사직의 희망을 전하여 결국 1946년 바티칸 주재 대사로 파견되었다. 그후 관련자의 심의와 2차례의 수정을 거쳐 그의 신약전서 역본은 48년 12월 교황청의 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중일전쟁 이후 오경웅은 서서히 정치활동에 복귀하는데, 국민참정회 및 국민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憲政實施協進會가 성립되고 오경웅은 다시 그 회원으로 지명되면서 「55헌초」에 대한 수정, 토론의 작업에 참여하다가, 종전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1946년 2월 정치협상회의 憲草심의위원회 위원 및 기초소조 성원으로 추대되었다. 政協의 「修改憲草 12개조 원칙」에 따라 「55헌초」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 때, 55헌초의 기초자로서 오경웅은 당연히 오오헌초의 제도 이념을 옹호했다. 그러나 국공의 결렬로 11월 15일 정협헌초회는 제헌 국민대회 개막까지 합의 헌초를 마련하지 못하여 국민당, 청년당 등 일부 정치세력만이 참가한 상태에서 「55헌초수정안초안」이 완성되고, 결국 制憲國大의 심의를 거쳐 12월 25일 「중화민국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헌법제정의 산파를 수행한 오경웅은 그 직전에 교황청 대사로 파견된다. 그후 국공 내전이 격화하고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1949년 2월 오경웅은 행정원정 손과로부터 사법부장 보임을 위한 귀국 명령을 받는다. 오경웅은 이에 응하여 귀국하지만 이미 장개석의 하야, 손과 내각 붕괴의 상황을 맞이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때마침 하와이 대학의 방문교수 초빙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후 오경웅은 하와이대학과 뉴저지의 시턴홀 대학(가톨릭계) 등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독교와 관련된 법률지능 및 기독교의 보통법체계에 미친 영향 등의 문제에 몰두하여 많은 강연과 저술활동을 폈다. 특히 천주교의 자연법 사상과 당대 법이론의 성과를 종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간의 자연법에 대한 연구를 묶은 『정의의 원천』(*Fountain of Justice*, 1955)은 그의 후기 법률사상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평가되며, 자신의 자연법 철학을 「진화하는 자연법」으로 명명했다.

또한 그의 법학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중국법률사상 및 중국철학 방면으로 확대되어, 당시 진행 중인 자연법 연구와 결합, 자연법 사상의 중국적 원류 내지 중국의 문화 전통에 나타난 자연법 사상과 같은 주제로 이어졌다. 「맹자의 인성론과 자연법」, 「중국철학 중의 자연법과 민주」, 「중국법률철학:역사와 회고」, 1959년 하와이대학 주최 동서철학자대회에서 발표한 「중국의 법률과 정치철학」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 연장선에서 그는 중서문화 비교류의 중국문화에 대한 강연과 저술에도 치력해, 영문으로 唐詩와 道德經을 번역하는 등 중국문화를 서양에 알리고 선양하는 일에도 힘썼다.

오랜 외국생활을 마치고 1961년 오경웅은 대만으로 돌아와 중국문화를 연구하는 기구 설립(재미중국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에 참여하고 장기균 등이 장개석의 찬동을 얻어내어 中國文化學院(훗날 中國文化大學)을 창설하였다. 오경웅은 이 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추대되고, 1966년부터 동대학 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저술과 저술에 종사했다. 그밖에 輔仁大學의 교장을 잠시 겸임하기도 했다.

끝까지 오경웅은 대만 국민당정부와 장개석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특기할만한 것은 ‘국민당 국부100년 탄신기념주비위원회’ 요청으로 영문판 손문 전기(*Sun Yat-sen The Man and His Ideas*, 1971)를 집필하였고, 국민당 10전대회 중앙평의위원으로 선출되고 71년부터 총통부 資政으로 보임 받아 손문 사상 및 삼민주주의의 선양에 힘쓰고 장개석 서거 후 「장개석의 정신생활」 등을 기념 출판하기도 했다.

그밖에 자신의 사상적 편력과 천주교에 귀의하면서 도달한 종교적 관점을 피력한 그의 자전 『동서의 피안』(*Beyon East and West*) 역시 종교철학적 자전의 모범으로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행운을 누리고 그밖에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한 종교서 『內心樂園』, 중국의 노장사상 불교사상에서 흐르는 선학의 전통을 풀어낸 『선학의 황금시대』 등을 저술하였다. 특히 선사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칠층산」의 저자) 신부와, 일본의 선사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과의 긴밀한 교류도 주목된다.

2. 법과 정치-삼민주주의의 입법자

오경웅이 국민정부와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남경정부가 본격적 입법활동을 통한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부터이다. 국민정부의 입법원장으로 취임한 호한민은 12월 입법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삼민주주의를 건국공작과 입법의 최고원칙으로 천명하였는데⁴⁾, 그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오경웅의 글 「법률삼도론」을 인용하였다. 「법률삼도론」은 모든 법률은 시간, 공간, 사실이라는 3개 차원, 즉 일정한 시간 중에 존속하고 일정한 영역과 인민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며 일정한 사실(현실)과 관련을 갖는다고 하는 법사회학의 상식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다.⁵⁾ 삼민주주의 이념의 체계화와 구현을 자처한 호한민은 ‘시간, 공간, 사실이야말로 법률이 의거하는 존재의 조건’이라는 오경웅의 논리에 따라 삼민주주의는 이 3가지 측면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삼민주주의는 시간적으로 혁명이 도래한 훈정시대에, 공간적으로 낡은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중국이라는 영토 범위에서, 또 사회 안정, 민족의 생존과 민생의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삼민주주의야말로 이 3개 차원에

4) 胡漢民, 「三民主義立法精義與立法方針」, 『胡漢民先生文集』 4책, pp.777-778

5) 「法律의 三度論」, 『法律哲學研究』, pp.17-19.

부응하는 입법의 최고원칙이라는 것이다.

손문의 삼민주의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혁명의 이념이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남경정부는 당초부터 손문의 삼민주의를 건국의 최고 원칙으로 삼아 모든 국가기구의 창설과 정치제도에 구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삼민주의가 입법원칙이어야 한다는 호한민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고, 오경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⁶⁾

오경웅은 「법률과 삼민주의」에서 “삼민주의는 우리의 목표이고 법률은 삼민주의를 관철하는 도구이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삼민주의가 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유보된 채, 법률의 정비는 삼민주의가 제시하는 민족, 민권, 민생주의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그가 왜 손문 사상에 공감하고 그에 입각한 입법 공작에 참여했는가 하는 내면적 동기와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단지 행정원장이던 손과의 제안에 응한 경우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이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어쩌면 당시 흠스의 실용주의적 법률관의 영향을 받은 그로서는 이 문제가 법률 실무가로서 자신의 영역이 아니고 다만 그 입법의 과정에 관여할 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른다. 물론 훗날 언급한 여러 글들을 통해 왜 중화민국의 건국 이념이 삼민주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조합해 볼 수는 있겠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오경웅은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의 「헌법초안초고」(일명 「오씨헌초」)의 여러 특징 중에서 삼민주의 국체를 확립하고 건국의 정신을 나타낸 점, 민생주의의 경제제도를 확립한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다. 특히 「오씨헌초」 1조에 삼민주의를 국체 앞에 명기(「중화민국은 삼민주의 민주공화국이다」)한 것은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1차대전 이후 헌법에 건국의 정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추세에 부응한 것이며, 中庸과 王道라는 중국의 민족적 특성과 선현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독창적인 것이라 자부하였다. 즉 과격주의인 소련의 공산주의, 이태리, 독일의 파시즘이나 낙후한 영미의 자본주의도 중국이 취할 바가 아니라면, 중용의 도를 추구하며 민족의 필요에 적응하는 삼민주의는 폭력에 의한 패도가 아닌 덕에 의한 왕도를 통해 천하위공과 대동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장 1조(116조)에는 ‘민생주의를 기초로 한’ 경제제도의 확립을 표명함으로써 구미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는 모순을 모두 지양할 것을 밝힌 점, 즉 헌법에 민생에 대한 자유방임적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와 분배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계급독재를 통한 생산수단의 집중화가 아닌 개량적이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균등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임을 규정했다는 것이다.⁷⁾

그 외에도 「오씨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의무, 권력구조(權能 분치와 오권, 총통의 지위), 중앙과 지방의 관계(균권주의), 민족문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인민의 자유권리’에서는 인민의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침해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률제한주의(또는 간접보장주의)를 택한 점은 주목된다. 즉 민권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의 유보가 없는 헌법보장주의(또는 직접보장주의)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초기초위 부위원장인 張知本 같은 인사는 이를 비판했지만⁸⁾, 당시 헌초기초위의 분위기는 ‘국난’의 시기에 국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 불가피한 제한을 인정하는 ‘법률제한주의’ 입장이 우세했고⁹⁾ 오경웅은 그 대표적인 주창자였으며¹⁰⁾, 결국 孫科 등의 지지를 받아 관철되었다.

6) 王龍飛, 「三民主義入憲探析-從‘吳氏憲草’到‘中華民國憲法’」,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30-1, 2011.

7) 「過去立法運動的回顧及此次制憲的意義」, 『法律哲學研究』, pp.161-165

8) 中村元哉, 「近代中國憲政史における自由とナショナリズム-張知本の憲法論と中華民國憲法の制定過程」, 石塚迅等編, 『憲政と近現代中國』, 現代人文社, 2010.

그런데 이때 오경웅이 법률제한주의를 채택한 것은 열강의 침략이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의 고려 외에 당시 세계조류의 영향, 즉 ‘사회 본위의 법률관’, 이른바 사회법학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인다. 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 법학자 파운드를 위시한 사회법학의 관점이 20세기 세계 입법의 추세가 되고 이것이 오경웅의 법률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泰西의 법률사상은 이미 刻薄寡恩한 개인주의 입장에서부터 일변하여 同舟共濟, 休戚相關의 연대주의로 변하였다’¹¹⁾고 한 오경웅의 생각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호한민을 위시한 국민당 지도자들 사이에도 널리 공유된 관점이었다.¹²⁾ 오경웅이 「訓政約法釋疑」를 집필한 것도 그의 법률관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즉 그가 국민당의 헌정 당치 및 인권박해와 관련된 여러 법제에 대해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사회이익 본위와 민족주의 정서에 영향을 받은 초기 오경웅의 정치적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씨헌초」는 (훗날 「55헌초」 및 「중화민국헌법」에도 일부 공통되지만) 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보다는 삼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 민생주의로 대표되는 사회개혁 추진의 근거로서의 도구적 헌법관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것은 실용주의 법학자 홈스의 영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그의 서구 법률사상의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홈스, 파운드, 슈탐러 법이론의 절충 과정 보충---미완부분)

오경웅은 사회본위의 삼민주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법 관련 글에서 보듯이) 그는 중국 유교 정명사상 하에 대가족 속의 개인의 위치와 의무를 중시하고, 나아가 이 가족관계를 사회관계와 통치관계로 확대하는 ‘민족심리’가 그에게 작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오경웅의 법사상에는 개체성 혹은 개인 권리에 관한 토론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기초위원으로서 국민당정부와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입법원칙으로서 삼민주의를 헌법에 정초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오경웅을 ‘삼민주주의의 입법자’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오경웅의 삼민주의 및 손문 사상에 대한 생각은 만년에 발표한 그의 글을 보면¹³⁾, 그때 오경웅에 의해 구성된 손문 사상은 전통윤리에서 발원하는 유심론적, 유교적 해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유가의 가장 내재적 핵심을 구성하는 인애의 철학이야말로 손문의 전체 사상체계의 기초이며, 이는 (손문과 마링의 대화를 소개하며) 계급 투쟁처럼 인간에 대한 미움을 혁명의 질료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와의 근본적 차이라고 하는 등, 일견 계급 조화론적 관점에서 삼민주의를 해석하는 국민당 우파 이론가 대계도의 삼민주의 해석과 비슷한 점이 있다. 손문 스스로 말했듯이 삼민주의는 3가지 연원이 있으니, 중국 고유의 사상을 이어받은 측면, 서구의 학설을 수용한 면, 그리고 독창적인 창안이 섞여 있는데, 민족주의는 중국 고유사상을 계승한 것이 많고, 민권주의는 서구학설을 받아들인 것이 많으며 민생주의는 손문의 창견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민생주의의 민생이란 정신과 물질의 생활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그의 번역을 principle of people's well-being으로 번역하여 종래 socialism과의 차별적 입장을 내세운다. 나아가 삼민주의라는 거대한 체계는 윤리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물종의 진화’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닌 호조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자와 기독교 휴머니즘 영향 외에도 크로포트킨의 호조론의 관점을 보탠다.¹⁴⁾(이

9) 吳經熊, 黃公覺, 『中國制憲史』, 1937, pp.124-125.

10) 「中華民國憲法草案的特色」, 『法律哲學研究』 p.122.

11) 「新民法和民族主義」, 『法律哲學研究』 p.176.

12) 賴偉, 「南京國民政府的立法活動與社會法學思潮」, 『中山大學研究生學刊』(社會科學版) 34-1, 2013; ; 韓久龍, 「論胡漢民的三民主義立法思想」,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5-2, 2008.

13) 「國父思想之綜合觀」, 「國父的學問與人格」 등이 대표적인데, 이 글은 만년에 여러 강연 원고를 모은 『哲學與文化』(1971)에 수록되어 있다.

에 대해서는 후술) 대만으로 귀국한 후 국민당정부로부터 손문의 공식 영문 평전 집필을 의뢰 받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오경웅의 손문관 및 삼민주의에 대한 해석은 그의 필생의 사상적 편력을 두루 거친 후에 제시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후술하겠지만 그의 관심이 ‘법률과학’에서 ‘법률철학’으로 옮겨져 특히 자연법 사상에 대해 천착하는데, 그 보편적 자연법의 원리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물론) 맹자를 위시한 유교 윤리철학에서 발견하고자, 그의 관심은 동서의 전통적 법률사상으로 확대된다. 즉 손문 사상의 이해도 이러한 자신의 사상적 편력(?) 끝에 나온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회통과 초월-전통 법률문화 및 자연법에 대한 관심

오경웅은 서양의 법이론의 수용과 소개에 그치지 않고 법에 대한 관심을 중국 전통문화로 확장하여 중국 전통 법률문화 및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 정리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가 법률과 관련된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주목한 이유는 그 전통 자체의 현상과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제도와 사상에 담긴 법철학의 논리를 이해하여 오늘날 중국의 법제의 현대화를 지체시킨 원인, 부적응한 요소를 탐구하고 또는 그러한 근대적 법제 건설에 의미있는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의 전통 법률문화의 탐구는 일단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먼저 「중국역사상의 법치와 인치의 논쟁」에서 오경웅은 (지나치게 법과 징벌의 기계적 적용으로 실패를 좌초했지만)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고 법이라는 객관적 강제력에 순종을 강조하는 법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대 동중서의 유술독존 이래 법률이 도덕의 시녀로 전락한 유가의 인치관념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수천년 간 ‘법률과학’이 매장 당했다고 주장하였다.¹⁵⁾ 아울러 그는 중국 구법제의 철학적 기초를 ‘천인교감의 우주관’, ‘도덕화의 법률사상’, ‘息事寧人의 인생관’ 3가지로 파악한다. 첫째 천인교감의 우주관이란 인간사회의 준비관념을 본래 아무런 준비구별이 없던 천지 자연에 투사하여 다시 이러한 우주관을 인간사회의 모델로 삼는 관점, 즉 왜곡된 천존지비의 우주관념에 의해 공고화된 인간세의 불평등한 준비관념이다. 둘째 도덕화의 법률사상이란 법률을 도덕의 도구로 간주하여 이러한 사회에서는 법률이 금하는 것은 모두 부도덕한 일이고 모든 부도덕한 일은 처벌해야 하며 따라서 법률이 금하는 것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말하자면 ‘강제성의 법률로 자유의 도덕을 실천하는’ 관점이다. 셋째는 ‘息事寧人의 인생관’인데, 고래로 중국인은 화평을 중시하여 송사를 피하고자 하는 ‘無訟사상’을 발전시켰지만, 쟁송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쟁송이 없으면 진리와 公道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쟁송의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여긴다면 억울함이 있는데도 伸冤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압박’의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쟁송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을 실현한다고 했다. 물론 無訟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며 중국인의 ‘中和之道’의 민족성이 분쟁의 법률적 해결 방식인 조정제도 운영에 적합한 것임을 지적한다.¹⁶⁾ 이처럼 오경웅이 舊법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률관념을 공격한 것은 도덕과 법률을 분리하여 법률이 사회진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의 실현을 위한 포석이었다.

오경웅이 반유교적 언설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가 중국법률문화 속에 현대 법치의 유용한

14) 「國父的人格及其根本思想」, 洪玉欽譯述, 『法學論文選譯集』, 三民書局, 1978, pp.55-59.

15) 「中國歷史上的仁治與法治之爭」, 『吳經熊法學文選』, pp.150-151

16) 「中國舊法制底哲學的基礎」, 『法律哲學研究』 pp.56-65.

자신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중국고전법전과 기타 중국법률 및 법률사상 원시자료선집」을 편한 것도 중국의 고대 법률의 발전 속에서도 서양법제의 요소, 예컨대 법률과 도덕의 분리, 사법의 독립 등이 존재하며, 중국도 서양과 유사한 여타 법률 사상들, 예컨대 노자의 자연법학파, 공자, 주문왕의 인본학파, 상양의 실증학파 등 풍부한 법률적 유산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전통 법률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자연법 사상의 입론에 즉각 활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경웅의 자연법사상은 크게 두가지 사상적 계보,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독교 자연법 사상과 맹자의 인성론, 양지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현대 법철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인 자연법 사상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입론을 전개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오경웅은 자연법의 존재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갖게 된다. 오경웅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을 3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永久法, 自然法, 人定法이 그것인데, 오경웅은 이를 나무에 비유하여 영구법은 뿌리이고 자연법은 그 줄기에 속하고 인정법은 가지들에 속한다고 설명한다¹⁷⁾ 영구법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의 섭리이고, 신의 예지의 다른 이름이며, 완전하여 어떤 변경도 불허하고 아무런 성장의 과정을 갖지 않는다. 모든 법은 정당한 이성을 가지는 한 영구법에서 유래한다. 자연법은 바로 ‘인간 이성의 영구법에 대한 참여’, 즉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한 영구법의 참여를 뜻한다. 그것은 인간성이 그 자연적 성향에 따라 자명하게 인식하는 법이며, 이 자연적 성향은 다름 아닌 善의 성향이다. 인간의 선천적 이성이 명하는 바의 도덕적 가르침이 바로 자연법의 가르침이다.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자명한 자연법의 제일원리 즉 보편적인 최상의 자연법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한편 사람의 법, 人定法은 시세와 관련되어 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토마스는 이성을 자연세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이론이성과, 가치를 평가하고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따지면서 선을 추구하는 실천이성으로 나눈다. 자연법은 (‘이론이성’ speculative reason이 아닌)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의 명령이며, 논리와 경험의 추리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기다리지 않는 자명한 원칙’이다.¹⁸⁾ 그러면서 이 실천이성의 불완전성, 오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포괄적, 추상적 규율인 자연법의 제일원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이 원리에 따른 개별적 결론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실천이성이 명하는 바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느님만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 이성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는 단지 제한적인 참여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토마스는 자연법이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법은 보태짐을 통해서(by way of addition) 변화한다’고 인정하였고, 자연법의 내용은 능히 또 마땅히 인류문명의 발전에 따라 그 무궁하게 진화한다고 하여, 이것을 ‘진화하는 자연법’(growing natural law)이라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오경웅은 자기의 법철학의 핵심 요지를 2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자연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다. 둘째 자연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진행되는 유기체이다. 즉 ‘진화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이다.¹⁹⁾

그런데 오경웅의 또 다른 노력은 토마스의 자연법 철학과 중국 선진유가의 윤리사상을 상호 결합으로 자연법의 보편성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토마스 자연법 철학을 분석함과 동시에

17) 오경웅(서각돈 역), 『정의의 원천』, 박영사, 1958.

18) 「自然法哲學的比較研究」, 『法律哲學研究』 p.32

19) 「在進化中的自然法」 『法律哲學研究』 p.45

오경웅은 맹자의 良知설에 주목하여, 良知, 四端과 같은 선험적 직관, 윤리적 직관을 중시하는 맹자의 이론을 이 자연법 사상에 끌어들인다.

일찍이 「중국고법전과 기타중국법률 및 법률사상원시자료선집」에서 오경웅은 자연법을 노자의 ‘道’라고 번역을 한 바 있다. 그 후 천주교에 귀의하고 토마스의 자연법사상을 받아들인 후 오경웅은 선진제자백가의 법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는데, 이때 그는 유가의 ‘道’야말로, 토마스의 관점에서 관조할 때 자연법이라고 인식했다. 비록 한때 유가의 인치 관념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지만 그의 주요 비판은 한대 이후 동중서가 음양오행 위에 건립한 유가 사상에 집중된 것 일뿐²⁰⁾ 유가가 중국전통 주류철학의 기초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유가가 중국인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오경웅은 ‘하늘의 命을 性이라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는 중용의 말을 중국윤리철학의 기점으로 삼고, 토마스의 자연법사상과 회통하고자 했다. 그는 道家의 道가 ‘天命’에 해당하고, 유가의 도는 ‘윤리의 極則’이자 서양철학의 이른바 자연법에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유가의 도가 윤리적 함의를 담고 있고 또한 그 형이상의 기초를 보존하고 있어서, 이 형이상의 기초 때문에 儒家의 인문주의가 無本 또는 無宗教 배경의 인문주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²¹⁾ 오경웅에 의하면 유가가 말하는 天命은 토마스의 영구법에 상당하고, 유가가 말하는 道는 자연법에 상당한다.

특히 그는 맹자를 매우 중시하였다. 맹자는 중용 윤리철학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고 중용의 존재론적 통찰을 목적론의 구조 가운데 위치시켰는데, ‘그 마음을 극진히 하는 자는 성을 알고, 그 성을 알면 천을 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을 극진히 하므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 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맹자』 「盡心章」)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즉 天命, 人性, 教化 3자가 형성하는 일관성의 연속체는 인간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자연법의 원리와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일치한다. “詩에 ‘하늘이 못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이 있도다, 사람들이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民之秉彝)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고 하고, 공자가 ‘이 시를 지은 자는 그도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으니, 사람들이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도덕을 좋아한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다(맹자 告子上). ‘하늘이 못 백성을 내어 사물이 있으면 법이 있다’라고 한 것은 하늘의 우주 만물 질서에 대한 합리적 지배를 지칭하고, 백성의 떳떳함이란 인간의 常性を 가리키니 이 常성이야말로 바로 천부의 규범이면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은 아름다운 도덕을 추구하는 인성에서 비롯되고 인성은 영구법에 대한 이성의 참여이며, 공자도 이러한 시를 쓰는 사람이 자연법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가의 윤리철학과 천주교 스콜라 철학은 존재론과 목적론이 형성한 자연법의 관념과 대단히 근접한다는 것이 오경웅의 주장이다.

토마스는 이성을 본질로 하는 법의 목적은 공동선에 있고, 보편적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이고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맹자 역시 주장하길 사람은 인의예지의 4덕을 실천할 수 있는 善端을 가지고 있고 人性에 善端을 갖추었다는 점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 본성에 충실하고자 하면 반드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인의예지의 덕을 실천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이러한 덕성의 일을 위배하지 않는 것인데, 맹자가 말한 바, ‘만물이 모두 내안에 갖추어져 있다. 몸을 돌이켜 성실하는 것은 즐거움이 그보다 더 클 수

20) 「中國新舊法制在哲學上之基礎」, 『法律哲學研究』 pp.67-70.

21) 「孔子思想與中華文化」 『內心悅樂之源泉』, 東大圖書公司, 1981, pp.53-54.

없다’(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맹자』 진심장)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연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이) 만년의 오경웅은 공자가 개창하고 맹자가 발양한 중국 유가 자연법철학이 당대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에서 부활되었다고 생각했다. 삼민주의라는 거대한 체계는 윤리학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이고, 손문이 「손문학설」에서 인류 진화의 원칙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物種의 진화와 달리, ‘物種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人類는 互助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 국가란 것은 互助의 體이고 道德 仁義는 互助의 用이다’ ‘인류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자는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이 된다”고 했고 예수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인류의 희망은 현재의 고통의 세계가 변화하여 극락의 천당이 되는 것이다’ 고 했다. 오경웅은 손문의 이러한 호조철학이 공자와 기독교 휴머니즘의 진리를 흡수했다고 보았고, 호조의 원칙과 모든 도덕가치가 분명히 天命에 뿌리를 둔 형이상학적 의의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²²⁾ 맹자의 인성론 뿐 아니라 손문의 삼민주의를 자연법 철학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과잉 회통’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국민당이 의지하는 정신으로서의 유가와 삼민주의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맺음말

오경웅의 법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전반생은 실용주의 법학과 사회법학의 농후한 영향 하에 중국의 근대적 법률제도의 건설에 참여한 시기였다. 따라서 ‘법률과학’자 내지 법률실무가로서의 활동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연법과 같은 ‘법률철학’의 문제를 깊이 사색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기독교 신앙이 그로 하여금 자연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적 사색에 몰두하면서 오경웅은 보편적 법규범의 원천에 대한 사고를 심화시키고 증서문화의 경계에서 증서문화와의 비교와 회통이란 방법으로서 자연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철학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결국 만년의 그의 ‘內心樂園의 源泉’은 천주교 신앙의 기저를 이루는 ‘中國文化의 薰陶’였다. ‘유가의 열락은 好學, 行仁, 사람들의 조화에서 기원하고, 도가의 열락은 逍遙自在, 無構無碍, 心靈과 大自然의 조화에 있고 忘我를 통해 眞我를 찾는데 이르고, 禪宗의 열락은 明心見性에 기탁하여 본래 면목을 추구하여 入世, 出世의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다’²³⁾라는 그의 말이 이를 요약해주고 있다.

오경웅은 일목요연한 정리가 불가능하리만치 다채로운 사상을 여러 방식으로 융합하려 한 법률가였다. 어떤 의미에서든 동서의 사상적 회통과 초월이야말로 오경웅의 필생의 이상이었으며,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Beyond East and West’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의 전반생에서 실용주의 법학 및 사회법학의 영향을 받은 유능한 ‘법률과학’자가 국민당정부의 입법 활동에 참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헌법 기초를 비롯한 근대적 법제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소박한 사명감도 여기에 충분히 작용했을 것이다. 즉 삼민주의 입법자로서 중화민국의 체제를 설계한 그의 생애는 대체로 정치와 밀착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가 후반생에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법이란 ‘법률철학’의 영역에서 자신의 학

22) 「國父思想之綜合觀」 『哲學與文化』, p.127

23) 「中國哲學之悅樂精神」, 『內心悅樂之源泉』, pp.1-26.

문적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이러한 그의 후반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서를 초월한 세계인, 경건한 종교인으로서의 그의 삶에서 ‘문화와 종교의 피안으로 도피한 일종의 정치적 투항주의’의 혐의를 읽어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 해석일까? 법에서 있어서 동서의 회통, 학문과 종교의 정합이라는, 어쩌면 지나치게 야심적인 기획을 도모했던 그에게 오히려 ‘정치적 삶’의 비중은 매우 작은 것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로서 오경웅의 일생을 보건대, 그가 관여하는 대상이 헌법이든 민법이든, 선진제자 법률사상이든, 자연법이든 간에 그는 법의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관심의 초점으로 삼아왔다는 점, 그리고 단지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과 맺을 수 있는 실존적 관계를 늘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필자의 흥미를 끌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경웅에게 있어서 법학은 가장 깊은 의미의 ‘修身’의 길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의 법사상 도처에 정치적 투항주의, 모호한 정신주의와 종교적 신비주의의 색채가 묻어나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내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